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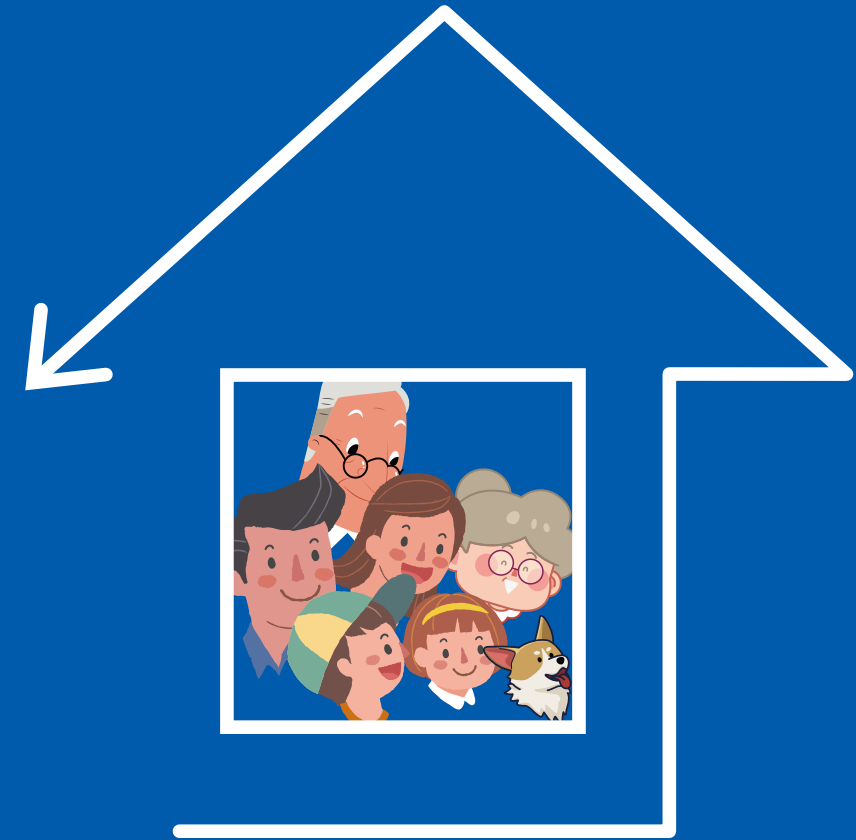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2019-교육지원-018

2019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019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발간등록번호
2019-교육지원-018

familyseoul.or.kr

2019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2019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2019. 12.

연구책임자	최새은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이지선	가야곡중학교 교사
	주현정	다정중학교 교사
연구보조원	이은진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석사과정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5
II. 이론적 논의	9
1. 가족인권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	11
2. 인권의식 및 사회적 편견 관련 실태	22
III. 델파이 조사 결과	29
1. 연구절차	31
2. 델파이 결과	32
3. 종합 논의	39
IV. 설문조사 결과	41
1. 연구대상	43
2. 조사도구	45
3. 주요 결과	46
V. 결론 및 제언	77
참고문헌	85
<부록> 설문지	89

[표 목차]

<표 I-1> 델파이 조사 내용	7
<표 I-2> 설문조사 내용	8
<표 II-1> 인권교육의 목표	14
<표 II-2> 발달 수준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도	17
<표 II-3> 가족인권교육의 목표와 핵심개념	18
<표 II-4> 인권교육 관련 문헌	20
<표 II-5> 교육대상에 따른 가족인권교육 내용	21
<표 II-6> 2011 국민인권 의식 실태조사 문항	23
<표 II-7> 2011, 2016 국민인권 의식 조사 문항 비교	25
<표 II-8> 혐오표현 국민인식 조사문항	26
<표 III-1> 델파이 조사 시기 및 내용	31
<표 III-2> 델파이 조사 참여자 특성	32
<표 III-3> 1차 시안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32
<표 III-4> 델파이 조사 1차 시안의 타당도 평가결과	35
<표 III-5> 1차 시안 개방형 의견 및 수정	36
<표 III-6> 2차 시안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37
<표 III-7> 델파이 조사 2차 시안의 타당도 평가결과	38
<표 III-8> 2차 시안 개방형 의견 및 수정	39
<표 III-9> 최종안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40
<표 IV-1> 조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4
<표 IV-2>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전반적 인식	47
<표 IV-3> 가족인권 침해 심각성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차이	47
<표 IV-4> 연령대별, 성별 가족 내 인권에 대한 심각성 인지의 차이	48
<표 IV-5> 우리 사회의 가족 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사용 정도 인식 수준	49
<표 IV-6> 가족의 사회소수자에 대한 편견 생산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차이	49
<표 IV-7> 연령대별, 성별 가족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편견의 심각성 인지의 차이	50
<표 IV-8> 주제별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 인식	52
<표 IV-9> 부부간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52
<표 IV-10> 부부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차이	53
<표 IV-11> 연령대별, 성별 부부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53
<표 IV-12> 부모 대상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54
<표 IV-13> 부모 대상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차이	54
<표 IV-14> 연령대별, 성별 부모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54
<표 IV-15> 조사대상자 특성별 자녀 대상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55
<표 IV-16> 인척 간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56
<표 IV-17> 인척관계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차이	56

<표 IV-18> 연령대별, 성별 인척관계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57
<표 IV-19> 세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57
<표 IV-20> 세대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차이	58
<표 IV-21> 연령대별, 성별 세대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58
<표 IV-22> 젠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59
<표 IV-23> 가족생활에서의 젠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차이	60
<표 IV-24> 연령대별, 성별 가족생활 젠더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59
<표 IV-25> 돌봄수혜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61
<표 IV-26> 돌봄수혜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차이	61
<표 IV-27> 연령대별, 성별 돌봄수혜자 위한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62
<표 IV-28> 돌봄제공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62
<표 IV-29> 돌봄제공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차이	62
<표 IV-30> 연령대별, 성별 돌봄제공자를 위한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63
<표 IV-3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63
<표 IV-3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차이	64
<표 IV-33> 연령대별, 성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64
<표 IV-34> 전반적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65
<표 IV-35> 전반적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차이	66
<표 IV-36> 연령대별, 성별 전반적 가족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66
<표 IV-37> 유년기와 현재의 가족인권 침해의 실태	67
<표 IV-38> 연령대별 가족인권 침해 실태	68
<표 IV-39> 성별에 따른 가정 내 성차별, 연령차별의 경험	70
<표 IV-40> 연령대에 따른 가정 내 성차별, 연령차별의 경험	71
<표 IV-41> 성별에 따른 가족생활의 다양성에 대한 차별 경험	71
<표 IV-42> 연령에 따른 가족생활의 다양성에 대한 차별 경험	72
<표 IV-43> 성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 대한 가정 내 차별 표현 경험	73
<표 IV-44> 연령대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 대한 가정 내 차별 표현 경험	75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방법 개요	6
[그림 II-1] Pyramid of Hate	13
[그림 II-2] 학교급별 인권교육 계열화 구상	16
[그림 IV-1] 조사 대상자 특성별 가족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46
[그림 IV-2] 연령대별 성별에 따른 가족인권 침해의 심각성 인식	48
[그림 IV-3] 연령대별, 성별에 따른 가족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	50
[그림 IV-4] 세대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령대와 성별의 상호작용	59
[그림 IV-5] 연령별, 성별에 따른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64
[그림 IV-6] 연령별, 성별에 따른 전반적 가족인권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66
[그림 IV-7] 유년기 가족 내 사회적 편견	68
[그림 IV-8] 현재 가족 내 사회적 편견	6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우리 사회는 다양성의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이다. 전체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4년 3.5%에서 2018년 4.5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법무부, 2019). 결혼이민자 또한 2010년 14만 1천명에서 2018년 15만 9천명(통계청, 2019)으로 증가하는 등 양적 변화를 볼 때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대표적이다. 가치의 측면에서도 유네스코의 2014-2021 교육 부문 전략을 통해 정부는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교육의 보급과 추진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의 움직임과 함께 성별, 인종, 출신 지역, 계층, 연령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권 의식도 증진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 환경에서는 인권 친화적 교과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교육 조치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개인은 가족 안에서 평등하고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자아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형성, 발전시킨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정환경에서의 인권교육은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가족인권은 왜 필요한가? 학교 인권이나 군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조직의 환경에 맞는 인권 조례가 제정되는 데에는 학교나 군대, 병원과 같은 조직에서 인권이 침해되기 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과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나 계급에 따른 위계가 분명한 군대의 경우에 조직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하여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민감도를 높인 결과 학교 인권이나 군 인권의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정 역시 아이부터 노인까지 여러 세대와 다른 젠더로 구성된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 쉬운 공간이다. 따라서 위계가 존재하는 가족 내의 인권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중에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이민가족, 난민가족 등 그 형태나 특성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가족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에 초점을 맞춘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상술하면 다음의 네 가지와 같다.

첫째, 가족은 가족원들 간의 연결된 삶(linked lives)을 산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Elder, 1994), 친밀한 가족원들이 각자 독특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서는 것을 일컫는 ‘관계상의 분화(differentiation)’에 실패하기 쉬우므로(Kerr & Bowen, 1988), 개인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삶을 위협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입시가족’이라고 일컬을 만큼 자녀들의 교육에 온 가족이 함께 힘을 쏟아야 하고(김현주, 2003), 특히 중산층의 어머니는 자녀 교육의 성공을 위한 ‘기획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으므로(조주은, 2013), 자녀 개인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홀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족원의 선택과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즉, 진학을 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을 하고, 이직을 하고, 파트너와 동거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등의 다양한 생애 주기상의 사건은 분명 다른 가족원들의 삶과도 분명 깊은 관련이 있지만, 특정 전이(사건)를 선택하거나 경험하였다고 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 정형화된 가족생활주기가 사라지고 다양한 삶의 양식을 선택하고 있는 오늘날에 부모는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다른 삶을 살 가능성이 높은 자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과거의 가족 문화 속에서는 가족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에 현대 사회에 맞는 민주적인 가족문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은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부장 중심의 위계가 분명하고 개인보다 가족의 성공에 가치를 두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개인의 삶의 질과 자아실현에 중심 가치를 둔다. 평등한 가족관계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지배적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민주적, 수평적 가족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족 내에서 ‘수평적’ 관계라는 것은 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와 같이 세대에 따른 위계와 출생순위라는 연령에 따른 위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영유아, 노인, 장애인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있고 가정 내에서 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다. 따라서 물리적인 힘의 차이나 경제적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 등 다양한 차원에 따라 **가족 내** 힘의 불균형이 형성된다. 이러한 가정 내의 힘, 자원, 역할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가정은 관계의 민주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장(場)이므로 가족에 대한 인권교육은 다른 어떠한 인권교육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은 작은 사회이다.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가 민주적일 때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가 되며, 동시에 사회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하게 될 때 가족관계 역시 민주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젠더와 세대 간의 갈등과 혐오가 심화되고 있는 현 사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젠더와 세대로 집단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젠더나 세대로 뗀어진 관계 속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점을 같이 찾고, 친밀한 관계 맺기를 배우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고, 가족인권교육을 통해 가족의 맥락 안에서 관계의 민주성을 배운다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은 정서적 지지와 유대가 핵심적인 기능으로 작용하고 세대 간 전이가 발생하는 곳이므로(한국가족상담연구소, 2010), 부정적 정서와 태도, 편견 또한 배우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성이 증가하는 현 사회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가족이라는 체계 속에서 가족원들은 좀 더 안전하게 자신들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전파하기 쉽다. 예를 들어 부모가 특정 종교나 지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가정 밖에서는 쉽게 그러한 편견을 드러내지 않고 조심하나, 집에서는 쉽게 부정적인 생각을 표현하기 쉽다. 이를 통하여 가정 내의 다른 가족원들도 편견을 공유하고 확장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향된 생각들이 쌓여 혐오와 차별 행동, 나아가 폭력, 테러, 학살까지 이어지는 것이므로(홍성수, 2018), 다양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 안에서의 인권의식이 향상된다면 우리 사회의 혐오나 갈등이 완화될 것이며,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인권교육의 범주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가족인권의 개념과 내용, 범위를 명료화하고자 한다. 한국 가족의 맥락 속에서 가족인권의 문제가 어떠한 지점에서 조율되고 명료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기존 인권교육에 기반한 분석적 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토대로 민주적 가족문화 형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울지역의 가족인권교육에서 제공할 목표와 핵심개념, 관련 내용요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서울시 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별, 주제별 맞춤형 가족인권교육이 기획되고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인권교육에 대한 정의를 명료화한다.

둘째,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셋째, 서울시민들의 가족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과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한다.

4) 연구 범위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을 위한 본 연구에서 정한 연구의 범위를 요소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체적 측면은 서울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이다. **교육대상**은 해당 센터의 이용자이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로 한정한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서울시 적응 대책 수립의 기본이 되고,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인권교육 관련 문헌 고찰에서부터 타당성 높은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종합,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과거와 현재 가족인권에 대한 인식 조사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전화이 조사 및 서울 거주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높은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 [그림 I-1]과 같다.

단계	연구방법	연구내용	산출물
1	문헌 고찰	- 인권교육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 - 가족주의와 인권, 다문화, 젠더, 가정폭력, 돌봄과 인권의 관계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 - 인권교육 프로그램 국내외 현황 조사	- 국내외 가족인권 관련 연구 현황 및 시사점 - 국내외 가족인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시사점
2	델파이 조사	- 가족인권교육의 목표, 핵심개념, 내용 요소 및 교육방법에 관한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1, 2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개발 및 시행, 결과분석	교육모델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3	설문조사	- 잠재 수요자 대상의 가족인권교육의 핵심내용과 방법의 요구도 조사 실시 - 온라인 설문조사 후 통계분석	가족인권교육내용 관련 인식조사 결과
4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델파이 분석 결과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델안 도출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

[그림 I -1] 연구방법 개요

1) 문헌 연구

본 연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근본적 문제인 가족인권의 정의와 가족인권교육의 목표, 핵심개념, 내용요소, 교육방법 등의 구체화를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인권교육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둘째, 가족인권교육과 관련 있는 가족주의, 다문화, 젠더, 가정폭력,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들과 인권과의 관계와 관련한 문헌을 고찰하며, 셋째, 국내외 시행되고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2) 델파이 조사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가족학자, 사회복지학자, 인권교육전문가, 가족생활교육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연구진 회의, 인권교육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가족인권교육 프로그

램 체계도 시안을 마련하고 체계도에서의 가족인권의 정의, 교육대상, 목표, 핵심개념, 교육내용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델파이 조사는 가족인권교육 체계도의 개요를 제시하고, 가족인권의 정의, 연구대상 분류, 목표, 핵심개념, 교육내용에 관한 타당도를 5점 척도로 선택하고, 각 영역에 대한 응답 이유와 개방형 추가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차 조사를 바탕으로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수정된 체계도에 대한 타당도를 5점 척도로 선택하고, 1차 체계도에서 타당도가 낮았던 연구대상에 대한 분류를 제외한 가족인권의 정의, 목표, 핵심개념, 교육내용에서 변경 사유를 제시하여 각 영역에 대한 개방형 추가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전문가의 주요 업무분야와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 전공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델파이 조사 내용은 <표 I-1>과 같다.

<표 I-1> 델파이 조사 내용

영역	문항
가족인권의 정의	가족이라는 맥락 속에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 ① 타당도 ② 응답 이유 ③ 수정 내용, 추가 내용
교육대상	예비부부, 신혼부부, 아동기 부모, 청소년기 부모, 아버지, 중년기 부부, 노년기 부부 ① 타당도 ② 응답 이유 ③ 수정 내용, 추가 내용 -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삭제
교육 목표	개인 존중, 관계 존중, 공동체 존중 ① 타당도 ② 응답 이유 ③ 수정 내용, 추가 내용
핵심개념	개인 존중(자아와 타인의 권리), 관계 존중(소통과 책임), 공동체 존중(시민의식) ① 타당도 ② 응답 이유 ③ 수정 내용, 추가 내용
교육내용	생애주기별 교육대상(예비부부, 신혼부부, 아동기 부모, 청소년기 부모, 아버지, 중년기 부부, 노년기 부부)에 따른 차별화된 내용선정 ① 타당도 ② 응답 이유 ③ 수정 내용, 추가 내용
사회인구학적 특성	
① 직업 ② 경력 ③ 전공	

3) 설문조사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도와 가족인권에 대한 의식 정도를 파악하여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 반영하고자 프로그램의 잠재 수요자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가족인권 침해 인식 정도, 가족인권 관련 교육 필요성, 응답자의 유년기에 인식한 가족인권 침해 정도, 응답자의 현재 가족인권 침해 정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내용은 <표 I -2>와 같다.

<표 I -2> 설문조사 내용

영역	내용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가족인권 실태 인식 수준	① 우리 사회 가족관계 내 인권 침해 정도 ② 우리 사회 가족 내 사회적 소수자 혐오표현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	① 우리 사회에서 가족인권교육의 필요한 정도 (부부간, 부모대상, 자녀대상, 인척간, 세대간, 성별, 돌봄수혜자, 돌봄제공자, 다양한 가족, 전반적 가족교육)
유년기·최근 1년 가족 내 가족인권 실태	① 가족관계(부부, 부모-자녀)에서의 폭력, 인권 침해 존재 ② 가족 내에서의 성별, 연령에 따른 차별 폭력, 인권 침해 존재 ③ 가족 내에서의 사회적 소수자 편견 존재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부정적 표현	① 성·연령에 의한 차별·편견·혐오표현 존재 ② 가족생활의 다양성에 대한 차별·편견·혐오표현 존재 ③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가정 내 차별·편견·혐오표현 존재
사회인구학적 특성	① 성별 ② 연령 ③ 학력 ④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⑤ 주 성장지 ⑥ 가구 형태 ⑦ 형제 자매 수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타당도를 확보하고, 프로그램 대상자의 인식도 및 요구도를 파악하여 민주적인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가족인권 프로그램 모델 개발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2019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II

이론적 논의

1. 가족인권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
2. 인권의식 및 사회적 편견 관련 실태

1. 가족인권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인권과 가족

인권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이다(인권용어사전,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적으로는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항).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0)에서는 인권을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해 가면서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을 권리의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으로 정의한다(문용린, 박병선, 안경환, 한기철, 2003). 한국교육개발원(2018)이 개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인권교육 지도 자료에서는 인권을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인권은 각 개인이 갖는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들의 권리는 상충하기도 하고 다른 권리에 의해 제약을 받기도 한다. 인권 침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과 행위가 인권 침해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본인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타인의 인권이 침해됨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교육개발원(2018)은 인권에 속하는 다양한 권리들의 상호관련성 때문에 인권 간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권에 속한 다양한 권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하여 인권 간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인권 관련 중요 국제선언 중 하나인 세계인권선언의 30가지 조항은 모두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면서, 타인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정리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18). 개인의 인권 존중과 보장, 실현은 결국 사람들 간의 관계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권을 개인 단위로만 해석하고 존중하기에 그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충돌하고, 타협하고, 변동하는 역동적인 권리로 해석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 집단인 **가족 내**에서 나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조율하고,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에 대한 예방과 해결방법을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가족인권교육은 인권 침해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출발점으로서 특히 의미가 있다. ‘혐오의 피라미드(Pyramid of Hate)’에 의하면 직접적인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심각한 폭행이나, 차별은 결국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에 기반하여 발생한다(그림 II-1 참조). ‘혐오의 피라미드’의 가장 저변에 있는 것이 편향된 시각, 태도, 관점이다. 집단 간의 혐오나 폭력과 같은 것은 모두 첫 단계 ‘편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게 되면, 해당 집단에 대한 편견이 정형화된다. 그렇게 형성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태도가 만연해지면 특정 집단에 대하여 실제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혐오표현이란, 특정 집단이나 그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한 위협이나 모욕적, 폭력적 말이나 행동을 사용하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9년 혐오표현실태 조사에서도 혐오표현이란,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편견을 조정하거나 멸시·모욕·위협을 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혐오표현의 사용을 넘어 3번째 단계는 실제 영역에서 차별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용, 서비스, 교육 등 삶의 영역에서 예를 들어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나 배제, 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혐오가 차별의 수준을 넘게 되면 피라미드 상층 4, 5단계의 심각한 강력 범죄에 이르게 된다. 폭행, 강간, 방화, 테러의 범죄가 발생하게 되며, 극단의 상황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학살까지 자행된다. 이처럼 특정 집단에 대한 심각한 범죄나 학살도 모두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공유한 편견들이 모이고 쌓여서 이르게 된 것이다.

개인이 어떠한 생각이나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는 가족과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의 영향이 크다.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것 또한 친밀한 관계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권 논의의 장에서는 가족 맥락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민주적 문화 형성을 위해 가정이라는 공간에서부터의 인권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가족에서부터 개인의 인권과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존중을 목표로 하는 가족인권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1958년 세계인권선언 10주년 기념 연설(우리의 손에 In Our Hands)에서 보편적 인권의 시작점은 ‘가정’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학교, 일하는 장소에서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즉, 인권이 개인의 가장 작은 세계인 가정에서부터 실현되지 않는다면 더 넓은 세계에서의 인권 실현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림 II-1] Pyramid of Hate

(source: 2018 ADL(Anti-Defamation League))

가족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보편적인 권리를 가진 개인의 인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인들로 구성된 가족 안과 밖에서 인권이 발현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따라서 가족인권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의 가족구성원들의 인권에 관한 내용과 함께 한 사회의 다양한 가족들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인권이 아닌 가족의 인권이라고 오해하여, 단위로서의 가족을 유지하고 가족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별 가족원의 희생이 해야 한다는 식의 가족주의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2) 가족인권교육의 목표

국가인권위원회(2006)의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안내서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UN에서 제시한 인권교육을 위한 단계적 접근법에 의하면 인권교육 목표의 가장 기본은 자아존중-부모와 교사 존중-타인 존중이다. 여기에서 교육대상의 연령에 따른 각 교육목표는 서로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전 단계의 목표를 모두 포함하여 성취되어야 할 나선형 목표로 제시하였다. 즉, 인권교육의 가장 기본 목표는 ‘존중’임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아이다호 인권교육센터(2003)의 인권교육모형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연령별로 사회 교과를 통한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아이다호의 교육모형 역시 나선형 교육과정 모형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학습 목표를 달성한 후, 점진적으로 다음 학습목표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학습목표인 ‘존중’을 시작으로 가족-이웃-세계로의 통합 관점의 목표를 보인다. 문용린, 박병선, 안경환, 한기철(2003)의 연구에서는 국제협약(1966년) 등 인권 관련 국제규약들에

근거하여 인권교육을 ‘인권에 관한 보편적 문화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보급, 정보 전달과 관련된 노력’으로 정의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학교급별로 계열화하여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문용린 외(2003)는 인권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하고, 다음으로는 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것, 나아가 다양한 배경을 갖는 나와 다른 집단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마음을 형성하고, 그러한 마음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인권교육의 목표를 정리하면 <표 I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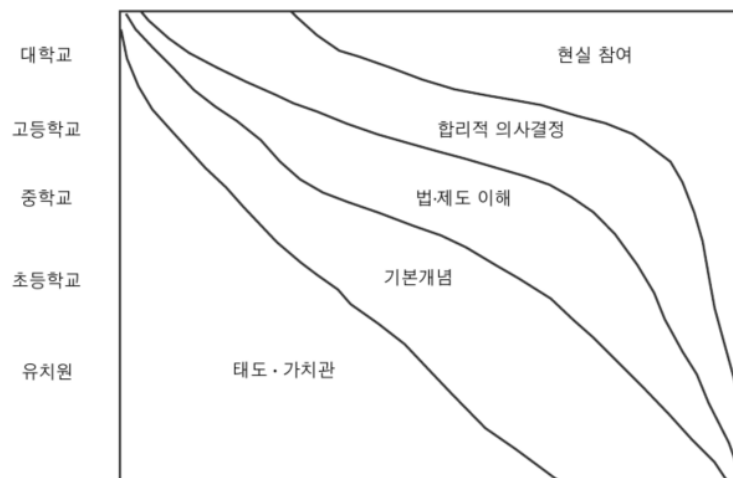
<표 II-1> 인권교육의 목표

인권교육 목표		
국가인권위원회(2006)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 수준의 행동 지침		•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 인간의 개성과 그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완전한 개발 • 모든 국가, 원주민, 인종·국적·민족·종교·언어 집단 사이의 이해, 관용, 성 평등, 우호관계 증진 • 모든 사람들이 자유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부여 •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촉진
UN High for Human Rights(1989) 인권교육의 단계적 접근법	만 3-7세	• 자아존중 • 부모와 교사 존중 • 타인 존중
	만 8-11세	• 사회적 책임 • 시민의식 •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 권리와 구분하기
	만 12-14세	• 세부적 인권에 대한 지식
	만 15-17세	• 보편적 기준으로서 인권에 대한 지식 • 인권을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통합하기
미국 아이다호 인권교육센터(2003) 인권교육 모형	유치원	• 존중(공감)
	1학년	• 존중과 가족
	2학년	• 이웃 존중
	3학년	• 사회적 책임
	4학년	• 장소와 사람들
	5학년	• 우리는 누구인가?
	6학년	• 우리가 속한 세계
	7-8학년	• 이주, 민주주의와 발전
	9-10-11학년	• 다양한 관점들을 통하여 ‘자아’를 정의, 통합
문용린, 광병선, 안경환, 한기철(2003)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유치원	• 가정, 학교, 사회에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식 • 안전, 청결, 공평,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등 낮은 수준에서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생활 태도 형성 • 살아 있는 동식물의 생명 존중
	초등학교	• 가정, 학교,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 의식 •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함 •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알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책임의식 기르기 • 자신과 타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태도 형성

중학교	• 인권의 기본 개념 형성 • 인권의 발달과정 이해 • 인권의 법적·제도적 장치와 그 절차 이해
고등학교	•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인권문제의 성격 이해 •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분석방법 연습 •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능력 기르기 • 현실적 인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학습경험 형성

인권교육의 목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가족인권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내용상 인권교육에서 중요한 교육 목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과 함께 ‘책임’이라는 점이다. 인권교육에서 강조하는 개인의 권리 존중은 나에게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타인과 내가 속한 세계로 확장되므로, ‘존중’과 함께 개인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을 갖추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다. 즉, ‘타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책임의식’, ‘사회적 책임’, ‘시민의식’을 키우는 것에 교육 목표를 둔 가족-이웃-세계로의 통합 관점의 목표를 가진다. 따라서 가족인권교육은 가족이라는 일차적 집단 내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등의 관계로 뗃어진 가족구성원이 상대방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존중’하고, 자신의 가족관계 속역할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함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대상에 있어서 기존의 인권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령별 학습목표를 점진적으로 확장시켰을 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세분화된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연령에 따른 위계가 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령이 낮은 사람에 대한 존중 교육도 필요하겠으나 지금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체계화된 바가 거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인권교육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성인들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가족인권교육은 발달수준에 따라 특정 연령대(학교 급간)의 개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로 구성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목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가족생활에서 강조해야 할 인권교육의 목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용린 외(2003) 연구에서는 인권교육내용의 계열화를 기본으로 제시하였는데(그림 II-2), 어느 연령대에서나 일차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태도·가치관 영역이므로, 여러 성과 연령, 세대로 구성된 가족인권교육에서도 ‘존중’과 같은 태도·가치관을 핵심 교육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2] 학교급별 인권교육 계열화 구상

(출처: 문용린, 박병선, 안경환, 한기철(2003), p.127)

다만 가족인권교육에서는 가족공동체 내에서 개별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조손관계 등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관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추는 것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장 작고 기본이 되는 가족 공동체에서 출발하여 이웃, 지역사회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인권교육의 목표 체계는 개인 존중-관계 존중-공동체 존중으로 상정할 수 있다. 가족구성원 내 개인의 인권 존중을 출발점으로 하여 가족관계에서의 존중과 책임을 강조하고, 가족인권이 또 다른 가족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존중'의 목표는 가족구성원 안에서 각 개인이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희생당하거나 차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관계 존중'의 목표는 가족인권에서는 개별 가족구성원의 독립된 인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당사자 간의 존중과 책임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존중'은 가족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가족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포용사회에 기여해야 함을 뜻한다.

3) 가족인권교육의 핵심개념

가족인권교육의 핵심개념을 도출하기 위하여 UN에서 제시한 인권교육 체계도(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989)와 발달 수준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도(Reardon, 2010)의 핵심개념과 가치를 분석하였다. 두 인권교육 체계도를 발달수준에 따라 재정리하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발달 수준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도

인권교육 체계도 (UN High for Human Rights, 1989)		발달 수준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도 (Reardon, 2010)	
발달수준	핵심개념	발달수준	핵심개념과 가치
유아기	자아 공동체 개인적 책임 의무	아동기	규칙 질서 존중 공평함 다양성 협력 책임
아동기	개인의 권리 집단의 권리 자유 평등 정의 법규 정부 보안	후기 아동기	법률 시민권 지역사회의 권리 권리장전 헌법 자유 선언 사회적 책무
청소년기	국제법 국제평가 세계발전 세계정치, 경제 국제 생태계	청소년기	정의 평등 형평성 협약 국제적 책무 국제법
청년기	도덕적 포섭/배제 도덕적 책임/교양	청년기	도덕적 배제 도덕적 책무 도덕적 포용 글로벌 시민성 환경에 대한 책무

UN의 인권교육 체계도(1989)에서는 유아기(3-7세) 시기에 자아, 공동체, 개인적 책임, 의무를 핵심개념으로 선정하고 공평, 자기표현과 경청, 협동과 공유, 소집단작업, 원인과 **결과**, 공감, 민주주의, 갈등해소의 행위목표를 선정하였다. 아동기(8-11세)에는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하여 자유, 평등, 정의, 법규, 정부, 보안 등을 추가하고, 청소년기(12-14세)에는 세계로 확대하여 국제법, 국제평가, 세계발전, 세계정치경제, 국제 생태계 등을 선정하였다. 청년기(15-17세)에는 보편적 기준으로 도덕적 포섭과 배제, 도덕적 책임과 교양을 인권교육에서의 핵심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유아기 수준에 제시된 핵심개념과 행위목표는 자아와 공동체, 개인적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가족인권교육에서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수준에서 관련된 인권문제로는 인종차별, 성차별, 불공평, 타인에 대한 상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권문제는 특히 가족공동체 내에서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족인권교육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Reardon(2010)에서 제시하는 핵심개념과 가치도 UN의 인권체제도(1989)에서의 핵심개념과 명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함을 보인다. 아동기에는 규칙, 질서, 존중, 공평함, 다양성, 협력, 책임을, 후기 아동기에는 법률 시민권, 지역사회의 권리, 권리 장전, 헌법, 자유, 선언, 사회적 책무를 핵심개념으로 제시하며 가정과 학급에서 사회로 그 가치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기에는 정의, 평등, 형평성, 협약, 국제적 책문, 국제법을 핵심개념으로 제시하고, 청년기에는 도덕적 배제, 도덕적 책무, 도덕적 포용, 글로벌 시민성, 환경에 대한 책무 등으로 핵심개념과 가치를 제시하였다. Reardon(2010)에서 제시하는 인권교육 체계도에 있어서 아동기 인권교육의 핵심개념 및 가치는 특히 가족인권교육으로 다루기에 적합하다. Reardon(2010)에서는 인권교육의 출발을 규칙, 질서, 존중, 공평함, 다양성, 협력, 책임과 같은 핵심개념과 가치를 배우는 데에서 출발하였는데, 이는 가족관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만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은 연령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세대에 따라 인권교육 수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규칙, 공평, 다양성 등의 태도와 가치에 관한 핵심개념을 가족인권교육에서는 다루는 것이 유용하다. 특히,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가족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계의 성격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규칙을 재정의하고 협력이나 책임과 같은 내용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가족인권교육에서는 개인, 관계, 공동체 존중을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대상별 차이 없이 가족인권교육의 핵심개념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인권교육 체계도가 발달 수준별로 핵심개념을 설정한 것에 반하여, 가족은 여러 성과 연령,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족인권교육은 모든 가족구성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태도와 가치를 핵심개념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인권교육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책임, 관계상의 소통, 협력, 공평, 다양성의 이해, 그리고 더 넓은 공동체 안에서의 시민성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 두 체계도에서 제시된 개인과 관계, 공동체로 확대되어 가는 핵심개념들의 토대로 하여, 각 핵심개념에서 의미하는 가치로는 개인 존중을 위해서 자아와 타인, 가족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권리를 제시할 수 있고, 관계 존중에서는 관계 당사자들 간의 소통과 책임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동체 존중은 시민의식과 관련한 가치로서 제시할 수 있다(〈표 II-3〉).

〈표 II-3〉 가족인권교육의 목표와 핵심개념

교육목표	핵심개념
개인 존중	자아와 타인의 권리
관계 존중	소통과 책임
공동체 존중	시민의식

4) 가족인권교육의 내용

가족인권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인권교육 관련 문헌 19개를 목록화(〈표 II-4〉)한 후, 가족인권교육의 내용으로 연계성이 높고 적합한지를 분석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2005)의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자기주변인식, 타인 존중, 공정이라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가족인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중 1차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에서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원하는 것 모두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아동권리 관련 인권조항과 관련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2차시 ‘그림으로 배우는 권리, 우리의 권리’에서는 아동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아동 인권의 역사를 배우고 자신이 권리의 주체임을 알게 하는 내용으로 기본권에 대해 학습하는 수업내용으로 구성하였다. 3차시 ‘인권 찾아 떠나기’에서는 놀이를 통해 인권의 종류를 이해하고, 4차시 ‘우린 다르지만 소중해요’에서는 모습은 달라도 누구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6차시 ‘파랑새’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의 의미 내용을 다루며, 7차시 ‘나의 몸, 각 부분의 권리’에서는 신체 각 부분의 권리를 이해함으로써 신체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였다. 12차시 ‘굶고 있는 아이들’에서는 기아 상태의 아동, 북한 아동 등의 생존권에 대해 알고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을 목표로 내용을 구성하고, 13차시 ‘누가 도와주어야 할까요?’에서는 빈곤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이해하고,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통해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알도록 수업 내용을 제시하였다. 16차시 ‘큰 소리로 이야기하자!’에서는 낮익은 차별의 사례를 통해 우리 가까운 곳에서 어떤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였고, 17차시 ‘엄마가 하는 일, 아빠가 하는 일’에서는 남녀가 하는 일에는 구별이 없음을 앞으로써 성차별과 양성평등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18차시 ‘신체적 특징은 차별의 기분이 될 수 없어요’에서는 외모나 신체의 특징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이해하고, 19차시 ‘술이의 추석 이야기’에서는 민족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고, 어떠한 문화도 우월하거나 뒤진 문화가 아님을 알도록 하는 수업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2차시 ‘소중한 나, 내가 지켜요’에서는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핵심내용으로 자기주변인식, 타인 존중, 공정, 개인의 권리와 의무, 인권감수성, 관용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중 가족인권에 해당하는 내용은 3차시 ‘아동 발달에 필요한 것’으로 아동의 권리증진에 필요한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권리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8차시 ‘소중한 나, 내가 보호할래요’에서는 자신의 소중한 몸이 침해당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자신도 주변의 친구들이 권리를 침해받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수업내용을 구성하였다. 9차시 ‘안전한 세상’에서는 학교나 가정에서 부당한 처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알도록 하고, 21차시 ‘살색 크레파스’에서는 피부색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알고, 23차시 ‘노동하는 어린이’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아동의 노동이 왜 금지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24차시 ‘후나스와 리사를 위해서’에서는 아동들에

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의 내용과 열악한 환경의 아동들은 더욱 특별한 사회적 관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며, 25차시 ‘나도 도와줄 수 있어요’에서는 모든 아동들은 굶주리지 않고 성장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였다. 26차시 ‘인간다운 행복한 삶’에서는 인간다운 삶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존권에 대해 이해하고, 32차시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에서는 아동들이 가정 속에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 하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였다. 34차시 ‘어떻게 돌봐줄까요?’에서는 가족 없는 아동에게도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39차시 ‘안돼요, 안돼!’에서는 성학대 피해에 대해 알고 대처방법을 익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절반 이상이 가족인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었으며, 가족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반영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을 담고 있었다.

〈표 II-4〉 인권교육 관련 문헌

연구명	연구자/연구기관	발행연도
1 초등학교 인권교육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	2005
2 우리 교과서의 인권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2002
3 인권친화적 도입을 위한 집필기준	국가인권위원회	2009
4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2006
5 인권교육자료 목록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2019
6 중등_교육과정연계 학생인권교육 지도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7 초등_교육과정연계 학생인권교육 지도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8 2016 인권교육추진계획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6
9 학생인권교육 자료 목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6
10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	서울특별시	2015
11 2016 중학생의 세계시민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2016
12 국제인권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8
1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14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조사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8
15 인권교육체계화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16 2018 인성교육지도자료(고등학교)	한국교육개발원	2018
17 2018 인성교육지도자료(중학교)	한국교육개발원	2018
18 2018 인성교육지도자료(초등학교)	한국교육개발원	2018
19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문용린, 곽병선, 안경환, 한기철	2003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우리 교과서의 인권이야기에서는 초, 중, 고 학교급별로 교과서에 실린 인권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 중 가족인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류하였다. 초등학교 교과서 중 국어에서는 ‘생각이 서로 다를 때’, 사회에서는 ‘촌락에서 일어나는 일, ‘가정의 여러 형태’, 도덕에서는 ‘공정한 일일까요?’ 중학교 교과서 중 국어에서는 ‘늦깎이 학생, 나의 어머니’, 체육은 ‘성문화’, 고등학교 교과서 중 국사에서는 ‘양성평등’, 기술가정은 ‘부모됨의 의미’, ‘노인의 인권문제’, 체육의 ‘올바른 성의식’ 등의 단원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교육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등의 가족인권과 가정폭력, 젠더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가족인권 문제 등을 담고 있었다. 이 외의 인권교육이 학교 단위 아동, 청소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대부분 실행되고 있어서 주제는 약간씩 다르지만, 내용 구성은 거의 유사하게 가족인권 문제 등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간에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실로 이루어진 교육프로그램인 서울시 가족학교의 구성에 맞추어 예비부부, 신혼부부, 아동기 부모, 청소년기 부모, 아버지, 중년기 부부, 노년기 부부로 생애주기별로 교육대상을 구분하였을 때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교육 내용과 관련한 인권 조항 등을 연결해 볼 수 있도록 가족인권의 이슈와 문제점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의 체계도에 서 생애주기별 교육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가족인권교육 내용을 추출하면 <표 II-5>와 같다.

<표 II-5> 교육대상에 따른 가족인권교육 내용

교육대상		교육 내용
예비부부	개인 존중	- 자신의 권리, 자아 인식, 자아존중감 확립 - 예비 배우자의 권리 - 성역할 사회화, 양성성
	관계 존중	- 긍정적 의사소통 - 공감적 이해, 공감과 수용
	공동체 존중	- 싱글, 성소수자 존중 - 결혼의 사회적 역할, 결혼문화
신혼부부	개인 존중	- 자신의 권리 자아 인식 - 결혼관 - 부부의 역할
	관계 존중	- 긍정적 의사소통 - 갈등해결 - 가족구성원의 인권 존중
	공동체 존중	- 근원가족, 창설가족 가족구성원들과 나와의 관계 이해 - 자신과 배우자의 가족문화와 규칙에 대한 이해
아동기부모	개인 존중	- 부모로서의 권리와 자아인식 -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로서의 자기돌봄
	관계 존중	- 아동기 자녀의 인권 존중 - 자녀와의 교류관계 - 성역할, 성평등
	공동체 존중	- 가족이기주의 - 양육문화
청소년기 부모	개인 존중	- 청소년기 부모로서의 권리와 자아인식 - 부모로서의 자기돌봄
	관계 존중	- 청소년기 자녀의 인권 존중 - 역할 공유, 양성평등적인 성역할 - 긍정적 의사소통 - 갈등관리
	공동체 존중	- 청소년문화, 청소년권리 이해 - 교육문화, 진로결정, 욕구이해

교육대상		교육 내용
아버지	개인 존중	■ 아버지로서의 권리 인식
	관계 존중	■ 가부장적 남성다움, 성역할 ■ 가족역할, 공동육아 ■ 자녀와의 교류관계, 애착, 존중
	공동체 존중	■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 여성의 인권 존중, 책임의식 ■ 가족문화의 변화
중년기부부	개인 존중	■ 중년으로서의 권리 인식, 중년기의 자아정체감 이해 ■ 노후생활 대비
	관계 존중	■ 긍정적 의사소통 ■ 갈등해결 ■ 중년기 배우자 인권 존중
	공동체 존중	■ 사회에서 돌봄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이해 ■ 노부모 돌봄 역할분담
노년기부부	개인 존중	■ 노인으로서의 권리 인식, 노화에 대한 이해 ■ 건강한 노후생활 ■ 노인의 역할 ■ 노인으로서의 자기돌봄
	관계 존중	■ 노년기 배우자 인권 존중 ■ 긍정적 의사소통 ■ 갈등해결
	공동체 존중	■ 가족의 돌봄과 가족생활의 변화

2. 인권의식 및 사회적 편견 관련 실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의식이나, 차별경험, 인권교육과 관련된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로 실시되었다. 인권의 사회심리적 측면에 주목하는 흐름에 따라(이쌍철 외, 2019) 군대(정원호 외, 2016)나 학교(김진희 외, 2018; 이쌍철 외, 2019)의 인권 실태나 인권교육 현황을 알아보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평생에 걸쳐 제일 오랜 기간 속해있는 가족 공동체 내에서의 인권실태나 인권의식, 인권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족 환경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 인권의식이나, 차별경험, 인권교육과 관련한 실태조사 중 주목할 만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2011년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정진성 외, 2011)는 전국 만15세 이상 일반 국민 약 1500명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문항은 인권 의식수준, 인권 침해 및 차별의 경험, 인권 관련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 인권 증진 방안,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경험, 청소년 인권 실태 등에 관하여 구성되었다. 자세한 조사 항

목은 <표 II-6>과 같다.

<표 II-6 >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문항

주제	범주	항목
인권의식과 평가	주요 인권 문헌 인지	• 세계인권선언 • 대한민국 헌법에 기본권 명시
	주요 인권상황 인지 및 평가	• 국제 인권상황 인지 • 한국 인권상황 인지 및 평가 • 국제 대비 한국 인권상황 평가 • 3년 전 대비 한국 인권상황 평가
	국제인권조약	• 국제인권조약 준수의 중요도
	기타	• 인권 vs 이권
인권 침해 및 차별	집단별 인권 존중도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복지시설 생활자, 비정규직 노동자, 군복무자, 노숙자, 피의자, 구금시설 수용자, 병력자,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미혼모, 성매매 여성, 전과자
	분야별 인권 존중도	• 신체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견·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의 보호, 주거권, 건강권, 환경권, 교육권,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인권 침해자 및 침해근거	• 주요 인권 침해자 • 인권 침해 발생 근거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	• 본인, 배우자, 가족의 경험 여부 • 간접 경험 여부 • 인권 침해 경험 시 대처방안
	시민적·정치적 권리생명권	• 사형제도의 유지, 학교선생님에 의한 교육목적의 차별, HIV/AIDS에 감염된 외국인의 강제출국 조치,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강제적 약물치료, 국내공항에서의 전신투시장치 도입, 호송 중인 중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국가보안법의 유지,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종교법인이 설립한 중·고등학교에서의 종교의식의 의무적 참여, 신념·종교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대체복무제
인권 관련 현안 및 정책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노인의 부양의무자 규정 유지, 2년 이상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내 불법체류 노동자에게 건강보험 혜택 부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혜택의 확대, 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높은 개발사업, 결혼이주여성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적응에 중점두기, 경제발전을 위한 인권의 제한,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 경찰의 성매매 집결지 집중단속 및 성매매자 처벌, 여성 채용목표제의 실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준수하지 않는 민간기업 처벌, 학교 교장에 의한 10대 미혼모 자퇴 요구,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자유로운 국내입국 허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혜택 제공, 난민 신청의 간소화 및 적극 지원, 성소수자의 존중
	대외 협력 및 북한 인권	• 대외원조 제공시 해당국가의 인권고려, 북한인권 상황 인지, 북한주민 인권향상을 위한 정부 조치
인권증진 방안	공공기관 평가	• 주요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노력에 대한 평가
	인권보호·신장 방법	• 효과적인 인권보호 및 신장 방법
	홍보 매체	•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매체
	인권활동 참여	• 인권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참여
인권교육	인권교육 경험	• 인권교육 여부 •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유경험자) • 인권교육이 적합한 장소(무경험자)
	인권교육의 필요성	• 전반적인 인권교육의 필요성 • 인권교육이 필요한 집단 • 공무원 인권교육의 의무화
	청소년 인권	• 정규교과목의 교육활동의 자유로운 선택, 단체기합, 학생의 자치권 제한, 학생의 사생활 침해, 학업 성적에 의한 차별, 가정환경에 의한 차별, 학생의 개인정보 공개,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성희롱, 표현의 자유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평가	• 인권위의 인지
		• 인권위에 대한 신뢰도
		• 인권위가 인권개선에 기여도
		• 향후 인권위의 기능(역할) 확대여부

출처: 이쌍철 외(2019).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p.33-34

2011 국민의 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도와 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 문헌인 세계인권선언문에 대해 들어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8.5%로 나타났으며, 헌법에 기본적 인권보호가 명시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고 답한 조사 대상자도 65.7%로 나타났다. 한편 인권 존중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에 대하여 ‘동의한다(매우+다소)’는 응답은 73.7%로 나타났다. 즉, 인권 실현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이란 자신의 권리 주장과 더불어 타인의 인권 보호도 까지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권은 개인의 권리 주장만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권교육 방향은 지식적 차원에 한정하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관계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집단별 인권 존중도에서는 성매매 여성, 전과자, 노숙자와 함께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의 인권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인권 침해와 차별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경제적 지위 34.8%, 학력·학벌 19.7%를 가장 많이 지목했는데 노동자 집단의 인권이 경제적 지위와 학력·학벌로 인해 차별받고 있음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인권 침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한 분야는 ‘개인정보 유출’로 나타났다. 온라인이 생활세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게 되었지만 **대규모 해킹**, 신상 털기, 악성 댓글에 대한 피해 사례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온라인에서도 인권 존중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 조사는 조사 문항 자체가 원론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실시되었다. 즉, 개인의 가족생활 내에서 밀접한 관계에서의 인권 침해나 차별에 대한 문항은 찾기 어려웠다. 당시까지는 인권의 사회심리적 측면보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2016 국민인권의식조사

2016 국민인권의식조사(구정우 외, 2016)는 2011년 이후 지난 5년간 변화된 인권 상황을 반영하여 설문지를 수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일반국민, 전문가집단, 초·중학교 학생이었다. 조사문항은 모두 여덟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권의식과 평가, 인권 침해와 차별, 헌안과 정책, 인권증진 방안, 인권교육, 청소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구사회학적 정보가 조사 주제에 해당하였다.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조사 문항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평소에 인권이라는 용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인권용어의 노출도’와 인권관련 지식을 얻게 된 ‘인권용어의 출처’를 묻는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또, 집단별 인권 존중도를 알아보는 조사 문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난민, 중구 및 구소련 동포, 범죄피해자 생활보호대상자/극빈자를 설문 문항 집단으로 추가하였으며, 2011년 설문 문항에는 있었던 성매매 여성과 노동자는 삭제하였다. 인권 침해 및 차

별의 주체에 관한 설문 문항에서는 교수, 직장동료, 의료인, 법률전문가, 정치인, 일반시민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가족상황과 전과를 인권 침해 및 차별의 원인으로 추가하였다.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달라진 2016 국민인권의식조사 문항 내용을 <표 II-7>에 정리하였다.

<표 II-7> 2011, 2016 국민인권의식 조사문항 비교

주제	범주	항목	2011	2016
인권지식 및 평가	인권지식 및 인지	• 인권용어의 노출도		○
		• 대한민국 헌법에 기본권의 명시	○	
	인권평가	• 인권용어의 출처		○
		• 국제 대비 한국 인권상황 평가	○	
인권존중도	집단별 인권 존중도	기타	○	
		• 문항 유지: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복지시설 생활자, 비정규직 노동자, 군복무자, 노숙자, 피의자, 구금시설 수용자, 병력자, 결혼이주여성, 북한 이탈주민, 미혼모, 전과자	○	○
		• 문항 추가: 다문화가정 자녀, 난민, 중국 및 구 소련 동포, 범죄피해자, 생활보호대상자/극빈자		○
	분야별 인권존중도	• 문항 폐지: 노동자, 성매매 여성	○	
		• 문항 유지: 신체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견·표현의 자유, 개인 정보의 보호, 주거권, 건강권, 환경권, 교육권	○	○
		• 문항 추가: 사회보장권, 노동권, 문화권		○
	인권 침해 및 차별의 주체	• 문항 폐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	
		• 문항 유지: 교사, 군대상급자, 교도관, 공무원, 경찰, 요양시설 종사자, 종교인, 기업인, 검찰, 언론인	○	○
		• 문항 추가: 교수, 직장동료, 의료인, 법률전문가, 정치인, 일반시민		○
	인권 침해 및 차별의 원인	• 문항 유지: 인종·피부색·출신국가, 성별, 경제적 지위, 나이, 용모, 종교, 학력·학벌, 성적지향, 장애, 출신지역, 혼인상태, 병력, 사상·정치적 입장	○	○
		• 문항 추가: 가족상황, 전과		○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 문항	인권 침해 경험	• 문항 유지: 불법연행·구금, 표현의 자유 제한, 사생활공개, 종교자유제한, 집회·시위참여제한, 단체결성·가입제한, 사회보장제한, 의료지원제한	○	○
		• 문항 추가: 공정한 재판 제한, 주거생활 제한, 열악한 노동조건, 쾌적환경 제한		○
		• 문항 폐지: 폭언경험, 신념·양심행동 제한	○	
	인권차별 경험	• 문항 유지: 성차별, 임신·출산 차별, 성희롱, 사상·양심·종교 차별, 장애차별, 연령차별, 학력·학벌차별, 비정규직차별, 출신지역차별, 인종·피부색차별, 용모차별, 혼인상황차별, 가족상황차별, 성적지향차별	○	○
		• 문항 추가: 직업·소득차별, 전과자차별, 질병·병력차별		○
		• 문항 폐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6). 2016 국민인권의식조사 결과보고서 재구성

이에 따라 5년간 인권의식의 변화에 있어서 일반 국민의 인권지식과 인지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응답은 높지 않았으나, 여전히 2011년과 동일하게 노동권 침해가 가장 높았다. 또한 성차별, 연령차별, 학력·학벌 차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인권 침해나 차별을 경험하더라도 아무 조치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무려 77.9%로 나타났다. 이 점은 인권 침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나 차별 상황임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지하더라도 인권 행동의사가 크게 부족함을 의미한다. 또한 인권이란 용어를 접한 경우가 ‘교육’이 아닌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만 인권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국민의 12.8%만이 인권교육 경험이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2011년 인권교육 경험 응답률 10%와 비교해보았을 때 인권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인권 존중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가족관계 내 인권이라든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차별 문항은 찾기 어려웠다.

3) 혐오표현 국민인식 조사(2019)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혐오차별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4영역이다. 혐오표현에 대한 경험, 혐오차별에 대한 인식, 혐오차별 대응정책에 대한 태도와 마지막 응답자의 기초 사항에 대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 자세한 조사내용은 <표 II-8>과 같다.

<표 II-8> 혐오표현 국민인식 조사문항

구분	조사내용
혐오표현에 대한 경험	- 온·오프라인 혐오표현 경험 - 혐오표현 영향 - 온·오프라인 혐오표현 사용
혐오차별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별 동의 정도 - 혐오표현 동의 정도 - 대상별 혐오표현 과거 대비 변화 - 혐오표현 원인 동의 정도 - 혐오표현과 정치인 - 혐오표현과 언론 - 혐오차별 관련 전망 동의
혐오차별 대응정책에 대한 태도	- 정부 차원 종합적 혐오차별 대책 수립 - 국회 차원 정치인 혐오표현 반대 표명 - 인권·다양성 존중 학교교육 확대 - 혐오차별 국민의식 개선 교육·캠페인 강화 - 인권위 등 차별시정기구의 혐오차별 규제 강화 - 혐오차별에 대한 형사차별 - 차별 금지 법률 제정 - 온라인 사업자 혐오차별 규제 노력 - 언론의 혐오 조장 보도 자제
기초 사항	성, 연령, 거주 지역, 직업, 최종 학력, 소득수준, 사회적 이념성향, 정치적 이념성향 등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9). 2019년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p.11.

주요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약 64.2%에 해당하는 770명이 온·오프라인에서 혐오표

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혐오표현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 유경험자에게 대상별 혐오표현 경험 빈도도 함께 조사되었다. 대상은 여성, 남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특정지역출신, 이주민, 북한 이탈 주민, 성소수자, 페미니스트로 제시되었는데 그 결과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혐오표현을 가장 자주 접한다(74.6%)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페미니스트(69.4%), 여성(68.7%)에 대한 혐오표현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여성 대상 혐오표현 인식은 남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혐오표현 사용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61.6%)가 가장 많았으며, 혐오표현에 동의(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하므로 사용한다는 응답비율도 50.0%로 나타났다. 또한, 너무 익숙해져서 혐오표현을 사용한다는 이유도 42.9%로 비교적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혐오표현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구조적 차별(77.4%)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언론과 가짜뉴스, 약자에게 분풀이도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혐오차별 관련 향후 전망에 대한 문항에서 조사 대상자의 대다수가 혐오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81.8%)'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나타냈다. 또한, 사회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차별현상은 고착화 될 것이라는 응답도 78%가 넘었다. 반면, 혐오차별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응답은 22.2%에 불과하였다. 앞서 인권피라미드에서 지목한 고정관념에서부터 시작한 차별이 심각한 범죄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실제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혐오표현에 '동의하므로', '너무 익숙해져서' 사용한다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혐오차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에 대하여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정책은 '언론의 혐오 조장 보도 자제(87.2%)'였다. 또한 '인권·다양성 존중 학교교육 확대(86.5%)'와 '혐오차별 국민인식 개선 교육·캠페인 강화(86.9%)'에 대한 교육적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혐오 조장 보도 자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의 대응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교육적 대응 정책은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측면의 가족인권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실태조사(2019)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9년 전국 만 15세 이상 17세 이하(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모두 4영역(혐오표현에 대한 경험, 혐오차별에 대한 인식, 혐오차별 대응정책에 대한 태도, 기초사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수는 총 17문항이었다. 혐오표현에 대한 경험 조사 영역에서는 국민인식 조사와 동일하게 혐오표현에 대한 경험 유무와 대상별 혐오표현 빈도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인식 조사에는 장소별 혐오표현 경험 빈도와 주체별 혐오표현 경험 빈도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장소는 학교, 학원, 집, 온라인(SNS, 커뮤니티, 유튜브, 게임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68.3%가 온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혐오표현 유경험자가 혐오표현을 가장 자주 접한 집단은 여성·남성에 대한 혐오로 성별에 대한 혐오표현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온라인 중 SNS에서 혐오표현을 가장 자주 접하고 있었다. 혐오표현 사용 이유로는 '혐오표현 내용에 동의(61%)'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19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 결과와 동일했다. 또한 혐오차별 관련 전망에 대해서도 86.2%가 '범죄로 이어질 것'으로 응답해 국민인식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청소년 또한 혐오차별 표현 사용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도 혐오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교육·캠페인 실시에 대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Ⅲ

델파이 조사결과

1. 연구절차
2. 델파이결과
3. 종합 논의

III

델파이 조사 결과

1. 연구절차

본 조사에서는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을 위한 가족인권의 정의, 교육대상, 목표, 핵심개념, 교육내용에 대하여 가족인권교육 체계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를 이용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시행 이전 선행연구 분석과 연구진 회의를 통해 개발한 시안을 가족학, 사회복지학, 인권 현장실무가 총 3인의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보완한 후,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를 개발하였다. 델파이 조사 시기와 조사 내용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델파이 조사 시기 및 내용

조사	조사 시기	조사 내용
1차	2019.10.20.-10.27.	정의, 연구대상 분류, 목표, 핵심개념, 교육내용 타당도 평가(5점척도) 체계도의 연구대상별 개방형 의견
2차	2019.11.20.-11.30.	정의, 목표, 핵심개념, 교육내용 타당도 평가(5점 척도) 수정된 체계도에 대한 개방형 의견

1차 델파이 조사는 가족학자, 사회복지학자, 인권교육전문가, 가족생활교육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조사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이메일을 통해 전달 및 회신하였으며, 1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12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족인권교육 체계도의 개요를 제시하고, 가족인권의 정의, 연구대상 분류, 목표, 핵심개념, 교육내용에 관한 타당도를 5점 척도로 선택하고, 각 영역에 대한 개방형 추가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 참여자 12명 전원이 참여하였으며, 2019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12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I-2>와 같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바탕으로 수정된 체계도에 대한 타당도를 5점 척도로 선택하고, 체계도에서 연구대상에 대한 분류를 제외한 가족인권의 정의, 목표, 핵심개념, 교육내용에서 변경 사유를 제시하여 각 영역에 대한 개방형 추가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III-2〉 델파이 조사 참여자 특성

전문가 분류	소속	직급
가족학 전공	00대학교	교수
	00대학교	교수
	00대학교	교수
	00구 건가센터	센터장
	00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노년학 전공	00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복지학 전공	00연구원	연구위원
	00연구원	연구위원
인권교육 실무자	00교육청 인권실천교사 위원회	교사
	00교육청 인권실천교사 위원회	교사
	국제엠네스티	현장실무자
	00교육청	장학사

2. 델파이 결과

가. 1차 델파이 조사

1) 1차 시안

1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12명의 전문가들은 가족인권교육 체계도의 1차 시안에서 가족인권의 정의, 교육대상, 목표, 핵심개념, 교육내용에 대해 타당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고, 각 영역별로 가족인권 내용에 대한 추가 의견을 개방형으로 기술하였다. 결과분석 시 타당도에 대한 양적 평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개방형 의견을 반영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 포함된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1차 시안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대상	목표	핵심개념	주요내용	관련 가족인권
예비 부부	개인 존중	자아와 타인의 권리	- 자신의 권리, 자아 인식, 자아존중감 확립 - 예비 배우자의 권리 - 성역할 사회화, 양성성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환경권(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관계 존중	소통과 책임	- 긍정적 의사소통 - 공감적 이해, 공감과 수용	
	공동체 존중	시민 의식	- 싱글, 성소수자 존중 - 결혼의 사회적 역할, 결혼문화	

대상	목표	핵심개념	주요내용	관련 가족인권
신혼 부부	개인 존중	자아와 타인의 권리	- 자신의 권리 자아 인식 - 결혼관 - 부부의 역할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환경권(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관계 존중	소통과 책임	- 긍정적 의사소통 - 갈등해결 - 가족구성원의 인권 존중	
	공동체 존중	시민 의식	- 근원가족, 창설가족 가족구성원들과 나와의 관계 이해 - 자신과 배우자의 가족문화와 규칙에 대한 이해	
아동기 부모	개인 존중	자아와 타인의 권리	- 부모로서의 권리와 자아인식 -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로서의 자기돌봄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보호권 -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 교육권 - 환경권(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관계 존중	소통과 책임	- 아동기 자녀의 인권 존중 - 자녀와의 교류관계 - 성역할, 성평등	
	공동체 존중	시민 의식	- 가족이기주의 - 양육문화	
청소년기 부모	개인 존중	자아와 타인의 권리	- 청소년기 부모로서의 권리와 자아인식 - 부모로서의 자기돌봄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참여권, 결정권 - 청소년의 발달권 - 교육권 - 노동권(근로의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 환경권(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관계 존중	소통과 책임	- 청소년기 자녀의 인권 존중 - 역할 공유, 양성평등적인 성역할 - 긍정적 의사소통 - 갈등관리	
	공동체 존중	시민 의식	- 청소년문화, 청소년권리 이해 - 교육문화, 진로결정, 욕구이해	
아버지	개인 존중	자아와 타인의 권리	아버지로서의 권리 인식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환경권(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관계 존중	소통과 책임	- 가부장적 남성다움, 성역할 - 가족역할, 공동육아 - 자녀와의 교류관계, 애착, 존중	
	공동체 존중	시민 의식	-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 여성의 인권 존중, 책임의식 - 가족문화의 변화	

대상	목표	핵심개념	주요내용	관련 가족인권
중년기 부부	개인 존중	자아와 타인의 권리	- 중년으로서의 권리 인식, 중년기의 자아정체감 이해 - 노후생활 대비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보건의 권리(건강을 향수할 권리) - 환경권(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관계 존중	소통과 책임	- 긍정적 의사소통 - 갈등해결 - 중년기 배우자 인권 존중	
	공동체 존중	시민 의식	- 사회에서 돌봄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이해 - 노부모 돌봄 역할분담	
노년기 부부	개인 존중	자아와 타인의 권리	- 노인으로서의 권리 인식, 노화에 대한 이해 - 건강한 노후생활 - 노인의 역할 - 노인으로서의 자기돌봄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 보건의 권리(건강을 향수할 권리) - 노동권(근로의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 문화적 권리 - 사회보장수급권;보건권 - 환경권(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관계 존중	소통과 책임	- 노년기 배우자 인권 존중 - 긍정적 의사소통 - 갈등해결	
	공동체 존중	시민 의식	가족의 돌봄과 가족생활의 변화	

2) 1차 시안 분석결과 및 수정내용

내용타당도는 Lawshe가 제시한 내용타당도 비율(CVR)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내용타당도의 적절성 기준은 0.8 이상인 경우 전문가들이 합의를 이루었다고 보고, 델파이 조사 타당도 평가 결과를 나타낸 표에 각 결과의 적절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음영 처리하여 표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인권의 정의, 교육대상, 모든 교육내용 중 공동체 존중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수정이 고려되었다. 또한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5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 가운데 문항별 평균이 4.00 이하인 경우 적절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교육대상’과 ‘교육내용’ 중 ‘신혼부부-공동체 존중’에 해당하는 영역을 삭제하였고, 전문가들의 개방형 의견을 반영하여 적절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문항들을 내용을 수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적절성의 해석 기준을 사분위수가 4.00-5.00 사이, 변이계수가 .50 미만일 때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한 것으로 간주하여(김지현·문무경·최윤경, 2017) 이를 확인한 결과, 프로그램 체계도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된 결과를 보였다.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영역에 대한 타당도 평가를 <표 Ⅲ-4>에 제시하였다. 교육목표와 핵심개념은 내용타당도가 0.83, 교육내용의 개인 존중과 타인 존중 모든 영역은 .82로 나타나 타당하게 평가되었으나, 가족인권의 정의와 교육대상은 각각 .50과

.17로 낮게 나타나 프로그램 체계도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III-4〉 델파이 조사 1차 시안의 타당도 평가결과

	영역	평균 (M)	표준편차 (SD)	사분위수 (Q1-Q3)	내용타당도 (CVR)	변이계수 (CV)
1	가족인권의 정의	4.00	0.71	3.25-4.75	.50	0.18
2	교육대상	3.67	0.62	3.00-4.00	.17	0.17
3	교육 목표	4.58	0.64	4.00-5.00	.83	0.14
4	핵심개념	4.42	0.64	4.00-5.00	.83	0.14
5	교육내용					
5-1	예비부부-개인 존중	4.18	0.83	4.00-5.00	.82	0.20
5-2	예비부부-관계 존중	4.27	0.86	4.00-5.00	.82	0.20
5-3	예비부부-공동체 존중	4.09	0.90	4.00-5.00	.64	0.22
5-4	신혼부부-개인 존중	4.18	0.83	4.00-5.00	.82	0.20
5-5	신혼부부-관계 존중	4.27	0.86	4.00-5.00	.82	0.20
5-6	신혼부부-공동체 존중	3.82	0.72	4.00-5.00	.64	0.19
5-7	아동기 부모-개인 존중	4.27	0.86	4.00-5.00	.82	0.20
5-8	아동기 부모-관계 존중	4.18	0.83	4.00-5.00	.82	0.20
5-9	아동기부모-공동체 존중	4.00	0.85	4.00-5.00	.64	0.21
5-10	청소년기부모-개인 존중	4.27	0.86	4.00-5.00	.82	0.20
5-11	청소년기부모-관계 존중	4.18	0.83	4.00-5.00	.82	0.20
5-12	청소년기부모-공동체 존중	4.00	0.85	4.00-5.00	.64	0.21
5-13	아버지-개인 존중	4.09	0.79	4.00-5.00	.82	0.19
5-14	아버지-관계 존중	4.27	0.86	4.00-5.00	.82	0.20
5-15	아버지-공동체 존중	4.09	0.90	4.00-5.00	.64	0.22
5-16	중년기부부-개인 존중	4.27	0.86	4.00-5.00	.82	0.20
5-17	중년기부부-관계 존중	4.18	0.83	4.00-5.00	.82	0.20
5-18	중년기부부-공동체 존중	4.00	0.85	4.00-5.00	.64	0.21
5-19	노년기부부-개인 존중	4.18	0.83	4.00-5.00	.82	0.20
5-20	노년기부부-관계 존중	4.18	0.83	4.00-5.00	.82	0.20
5-21	노년기부부-공동체 존중	4.18	0.94	4.00-5.00	.64	0.22

〈표 III-5〉에는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개방형 의견 중 지표 수정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 의견들을 정리하였다. 가족인권의 정의에서는 가족인권이 가족이라는 맥락 속에서 누리는 권리라는 정의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양적조사에서 타당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가족인권의 정의를 가족이라는 맥락 속에서 관계를 맺는 모든 사

람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으나 대상이 모호하다는 의견과 가족인권이 가족이라는 집단의 인권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가족인권의 정의’를 ‘가족인권교육의 정의’로 수정되어야 함이 고려되었다.

가장 낮은 내용타당도를 보인 교육대상은 1차 시안에서 가족인권교육이 서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차적으로 활용될 예정이기에 서울시 가족학교의 구성에 맞추어 예비부부, 신혼부부, 아동기 부모, 청소년기 부모, 아버지, 중년기 부부, 노년기 부부로 분류한 것이었다. 구체적인 전문가 의견에서 생애주기별 구성으로 교육대상 선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영아의 돌봄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각 단계 부부교육 내용에 아버지의 교육 내용을 포함시켜 이를 강화하자는 내용과 부모의 인권 외 자녀의 인권의 내용이 더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가족 내** 관계가 소원하거나 없는 1인가구, 비혼 또는 동거 가족, 무자녀부부,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성인 자녀가 분거하지 않는 한국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성인자녀 부모의 경우 등 혼인과 출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사회의 정상가족 프레임에 벗어나 변화하는 현대가족의 니즈(needs)를 다양하게 반영하는 카테고리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단계나 가족 유형의 인권은 소외될 위험이 있고, 결혼을 전제로 생애주기에 한정하여 교육대상을 분류한 경향이 있으므로 가족인권교육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교육대상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의 가족인권교육을 위해 대상을 분류하여 한정하기보다는 교육 목표에 집중하여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교육대상 분류를 삭제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육대상에 맞추어 제시되었던 교육내용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지적이 있었고, 개인 존중, 관계 존중, 공동체 존중으로 내용을 분류함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여 생애주기별 교육대상에 따른 내용을 삭제하면서 생애주기별 제시되었던 교육내용은 교육 목표와 핵심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통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내용타당도가 높은 교육대상과 교육 목표는 대체로 그 내용에 동의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이러한 모든 개방형 의견들을 반영하여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2차 시안을 마련하고, 2차 델파이 조사에 적용하였다.

〈표 III-5〉 1차 시안 개방형 의견 및 수정

영역	주요 개방형 의견	수정 후
1. 가족인권의 정의	- 가족인권이 가족구성원의 인권보다는 가족 집단의 권리나 목표로 오해할 여지가 있음(예: 1인 가구는 가족인권에서 제외된다고 직관적으로 생각됨) - 가족인권교육이 학교나 군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족이라는 친밀한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 간의 인권 침해의 사례나 다른 가족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함에 동의함	‘가족인권’의 정의를 ‘가족인권교육’에 대한 정의로 수정함 - 가족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가족 내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보편적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가족 안에서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함
2. 교육대상	가족인권교육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차적으로 활용될 예정이기에 서울시	연구대상 분류 삭제함

영역	주요 개방형 의견	수정 후
	가족학교의 구성에 맞추어 연구대상을 상정하였음. 그러나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단계나 가족 유형의 인권은 소외될 위험이 있고, 결혼을 전제로 한 생애주기에 한정하여 교육대상을 분류한 경향이 있으므로 가족인권교육의 취지와 맞지 않음 ▪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의 가족인권교육을 위해 대상을 분류하여 한정하기보다는 교육 목표에 집중하여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3. 교육 목표	▪ 가족 내 개인 단위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상대적 관계의 존중, 더 나아가 공동체에 대한 존중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목표의 타당성에 동의함 ▪ 실제 교육내용에서 가정폭력의 심각성, 예방 및 대응 방안, 인권의 보호·보장, 공동체의 범위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교육내용이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자기 존중-가족 존중-다양한 가족 존중'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 그대로 유지함
4. 핵심개념	▪ 교육목표와 동일한 맥락(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의 특성상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로 개인-관계-공동체)에서 핵심개념 선정 타당성에 동의함 ▪ 타인 및 다른 가족이 존중받을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다른 가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제시를 통해 핵심개념의 보완적 설명이 필요함을 제시. 더불어 권리를 개인 존중에서만 명시한 이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그대로 유지함
5. 교육내용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분류 삭제함 ▪ 교육목표와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해당 교육내용 통합 제시함	▪ 생애주기별 교육대상에 따른 내용 분류 삭제함 ▪ 생애주기별 제시되었던 교육내용을 교육 목표와 핵심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통합 제시함

나. 2차 델파이 조사

1) 2차 시안

1차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가족인권의 정의, 교육대상, 교육목표, 핵심개념, 교육내용에 대한 타당도 평가를 통해 내용타당도가 0.8 이하인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개방형 의견을 검토하여 2차 델파이 조사를 위한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로 2차 시안에 대한 수정 방향을 정하고 수정된 체계도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결과 수정된 2차 시안의 체계도를 <표 III-6>에 제시하였다.

<표 III-6> 2차 시안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교육 목표	핵심개념	주요 교육내용	관련 가족인권	관련 가족인권 문제
개인 존중	자아와 타인의 권리	▪ 자기 권리 ▪ 자기 존중 ▪ 타인(다른 가족원)의 권리 ▪ 타인(다른 가족원) 존중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차별받지 않을	▪ 가정폭력 ▪ 젠더폭력 ▪ 아동학대 ▪ 노인학대 등

교육 목표	핵심개념	주요 교육내용	관련 가족인권	관련 가족인권 문제
관계 존중	소통과 책임	▪ 공감적 이해와 수용 ▪ 친밀한 관계에서의 의사소통 ▪ 갈등관리와 갈등해결 ▪ 가족돌봄 역할 공유	▪ 권리 ▪ 환경권(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보호권 ▪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 교육권	
공동체 존중	시민 의식	▪ 사회적 소수자 존중 ▪ 포용적 공동체 문화 조성		

2) 2차 시안 분석결과 및 수정내용

2차 시안 분석 결과 <표 III-7>과 같이 타당도 평균(M)이 4.25~4.67로 높게 나타났다. 적절성 평가로 내용 타당도, 사분위수, 변이계수 등을 확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절 수준 이상으로 나와 프로그램 체계도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7> 델파이 조사 2차 시안의 타당도 평가결과

프로그램 체계도 영역	평균(M)	표준편차 (SD)	사분위수 (Q1-Q3)	내용타당도 (CVR)	변이계수 (CV)
1. 가족인권교육의 정의	4.25	0.62	4.00-5.00	0.83	0.15
2. 교육목표	4.42	0.67	4.00-5.00	0.83	0.15
3. 핵심개념	4.67	0.49	4.00-5.00	1.00	0.11
4. 교육내용					
4-1. 개인 존중	4.42	0.51	4.00-5.00	1.00	0.12
4-2. 관계 존중	4.42	0.51	4.00-5.00	1.00	0.12
4-3. 공동체 존중	4.33	0.49	4.00-5.00	1.00	0.11

2차 시안의 전체 영역에 대한 개방형 의견을 <표 III-8>에 정리하였다. 가족인권교육을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가족 내**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보편적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가족 안에서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으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재생산’이라는 단어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한 가족인권교육의 정의로 수정하였다. 교육 목표와 교육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핵심개념에서는 다소 모호함이 있는 용어 변경 의견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최종안에 변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표 III-8〉 2차 시안 개방형 의견 및 수정

지표 영역	주요 개방형 의견	수정 후
1. 가족인권교육의 정의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가족 안에서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재생산’이라는 용어 변경 제안 ▪ 정의에 개인과 공동체 부분만 드러난 것으로 보이므로 관계적 요소 추가 제안 ▪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조금 더 드러낼 것을 제안	▪ ‘사회적 소수자’ 대신 ‘사회적 약자’, ‘재생산’ 대신 ‘공유 및 확산’으로 수정 ▪ ‘가족의 모든 구성원’을 ‘개인’으로만 한정짓지 않도록 ‘가족의 맥락 안에서’로 수정 ▪ ‘건강하고 포용적인 공동체 문화에 기여’하는 교육임을 명시
2. 교육 목표	▪ ‘관계’와 ‘공동체’의 구체적인 설명 제안	▪ 서두의 지향점에 제시함.
3. 핵심개념	▪ ‘나와 타인의 권리’로 용어 변경 제안 ▪ ‘권리’ 용어 변경 제안 ▪ ‘책임’과 ‘시민의식’의 모호함	▪ 자아와 타인의 권리를 나와 타인의 권리로 변경함

3. 종합 논의

가족인권교육의 지향점은 민주적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가족구성원 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존중을 목표로 하는 가족인권교육을 구성하고자 한다. 나아가 자신의 가족과는 다른 다양한 가족의 선택이나 문화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존중을 목표로 설정하여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공헌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가족인권교육을 ‘존중과 책임의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가족의 맥락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보편적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가족 안에서 공유 및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건강하고 포용적인 공동체 문화에 기여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가족인권교육의 목표는 **가족 내** 개인 단위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상대적 관계의 존중, 더 나아가 공동체에 대한 존중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존중, 관계 존중, 공동체 존중으로 분류하였다. 핵심개념은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의 특성상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로 개인 존중에서는 나와 타인의 권리, 관계 존중에서는 소통과 책임, 공동체 존중에서는 시민의식으로 분류하였다.

교육 목표와 핵심개념을 기준으로 주요 교육내용을 보면, 개인 존중을 위해서는 나와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자기의 권리와 다른 가족구성원의 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법에 관한 것이다. 관계 존중의 소통과 책임의 핵심개념은 가족관계 안에서 공감적인 이해와 수용하는 법, 소통하는 법, 갈등 상황에서 이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존중을 위해 시민의식이라는 핵심개념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포용적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비관적 사고와 실천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가족인권교육을 통해 예방하고, 주시해야 하는 가족인권문제로는 가정폭력, 젠더폭력,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와 같은 문제가 있다. 가족인권교육이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권의 문제로는 가족 내의 지위나 역할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권리, 돌봄의 제공자나 수혜자 모두 보호받을 권리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그리고 가정의 안과 밖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관련 인권과 관련 가족인권 문제를 포함하여 <표 III-9>와 같다.

<표 III-9>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최종안

교육 목표	핵심개념	주요 교육내용	관련 가족인권	관련 가족인권 문제
개인 존중	나와 타인의 권리	■ 자기 권리 ■ 자기 존중 ■ 타인(다른 가족원)의 권리 ■ 타인(다른 가족원) 존중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관계 존중	소통과 책임	■ 공감적 이해와 수용 ■ 친밀한 관계에서의 의사소통 ■ 갈등관리와 갈등해결 ■ 가족돌봄 역할 공유	■ 환경권(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보호권 ■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 교육권	■ 가정폭력 ■ 젠더폭력 ■ 아동학대 ■ 노인학대 등
공동체 존중	시민 의식	■ 사회적 소수자 존중 ■ 포용적 공동체 문화 조성		

IV

설문조사결과

1. 연구대상
2. 조사도구
3. 주요 결과

IV

설문조사 결과

이 장에서는 서울특별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비 **교육대상**자들의 교육 필요성 및 요구도 정도를 파악하고, 가족인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교육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민주적인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발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1. 연구대상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족인권교육 요구도 및 가족인권에 관한 의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10대부터 60대까지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온라인 패널을 구축하고 있는 조사업체에 위탁하여 2019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내용을 검토한 후 본조사 역시 동일한 조사업체에 위탁하여 15세 이상의 10대부터 ~ 60대까지 남녀 할당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 기간은 2019년 11월 21일~11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 대상자의 현재 거주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한정하였다. 설문 대상자를 서울시민으로 한정 한 이유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예비 **교육대상**자로 한정함으로써 추후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총 63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표 IV-1〉).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이 39.2세로 연령대별로 약 100명의 조사대상자가 분포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성별 구성도 유사하였다(여 312명, 남 320명). 연구대상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는 165명이었으나, 이 중에서 19세 이하 학생이 109명이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매우 낮은 비율이고, 전문대 졸업이 73명, 4년제 대학교 졸업이 329명으로 전체의 52.1%를 차지하였다. 대학원졸업은 응답자의 약 10%를 차지하였다. 사회경제적 생활수준에 있어서, 연구대상자의 73.7%는 중간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고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1.5%, 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가족 환경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형제자매 관계는 평균 2.17명으로서 외동인 경우는 7.4%이었고, 1명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44.6%로 가장 많았고, 2명인 경우가 19.8%, 3명 이상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28.2%를 차지하였다. 유년기 가족의 특성을 보면 유년기 평균 가족원 수는 4.75명으로 4인 가족이 44.8%, 5인 가족이 18.5%, 6인 이상 가족이 22.9%를 차지하였다. 유년기에 조부모와 같이 살았다는 응답자가 16%이었고 나머지는 핵가족 형태에서 유년기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유년

기에도 서울에서 성장한 응답자는 77.7%이고 나머지 22.3%는 다른 지역에서 지내다가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는 경우이었다. 현재의 가족 특성을 보면, 평균 가족원 수는 3.27명으로 유년기에 비해 평균 1.5명이 더 적은 가족 규모를 보였다. 응답자가 1인가구인 경우와 5인 이상의 가족이 사는 경우가 각각 9.5%와 9.3%로 유사했다. 2명이 사는 경우는 14.1%, 3인 가족이 29.7%, 4인 가족은 3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응답자 중에서 결혼을 한 경우는 10대를 제외한 523명의 응답자 중에서 62%(325명)를 차지했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54.9%(287명)를 차지하였다.

<표 IV-1> 조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632)			
변인	범위	Freq	%
성별	남	320	50.6
	여	312	49.4
연령	20세 미만(15~19세)	109	17.3
	20세 이상 ~ 30세 미만	108	17.1
	30세 이상 ~ 40세 미만	105	16.6
	40세 이상 ~ 50세 미만	106	16.8
	50세 이상 ~ 60세 미만	104	16.4
	60세 이상	100	15.8
Mean = 39.15 (SD = 15.7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5	26.1
	전문대학교 졸업	73	11.5
	대학교 졸업	329	52.1
	대학원 졸업	65	10.3
주관적 사회경제생활수준	하	136	21.5
	중	466	73.7
	상	30	4.8
형제자매 수	외동	47	7.4
	1명	282	44.6
	2명	125	19.8
	3명 이상	178	28.2
Mean = 2.17 (SD = 1.51)			
유년기 조부모 동거 유무	조부모 동거(3세대 가족)	102	16.1
	비동거	530	83.9
유년기 주 성장지	서울	491	77.7
	타지역	141	22.3
유년기 가족원 수	2명	10	1.58
	3명	77	12.18
	4명	283	44.78
	5명	117	18.51
	6명 이상	145	22.94
Mean = 4.75 (SD = 1.56)			
현재 가족원 수	1명	60	9.49
	2명	89	14.08
	3명	188	29.75
	4명	236	37.34
	5명 이상	59	9.34
Mean = 3.27 (SD = 1.19)			
배우자 유무 (10대 제외, N=523)	있음	325	62.14
	없음	198	37.86
자녀 유무 (10대 제외, N=523)	있음	287	54.88
	없음	236	45.12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인권의식실태조사와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 문항에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네 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2) 가족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3) **가족 내**에서의 인권 침해 4) 가족 밖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다.

가족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은 가족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통해 측정하였다. 가족인권 침해의 심각성은 두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1) 우리 사회의 가족 관계(부부 간, 부모자녀 간, 형제자매 간, 고부 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차별, 폭력과 같은 문제의 심각성과 2) 가족 안에서 표현되는 사회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차별, 언어적 폭력의 심각성을 묻는 문항이었고, ‘전혀 심각하지 않다’(1)에서 ‘매우 심각하다’(4)의 4점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서 가족교육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1문항과 구체적 가족인권교육 내용에 한정하여 필요성을 묻는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9문항은 각각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중 부모대상과 자녀대상, 인척관계, 세대 이해, 양성평등, 돌봄수혜자(아이, 노인, 장애인)의 권리, 돌봄제공자(양육자, 가족간병인)의 권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모든 문항에 대해 ‘전혀 필요하지 않다’(1)에서 ‘매우 필요하다’(4)의 사이에서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가족 내의 인권 침해 실태와 관련해서는 유년기(15세 이전) 가족과 현재 가족 안에서 인권 침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였는지를 각각 5문항씩 측정하였다. 이 중 두 문항은 가족관계(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인권 침해의 심각성, 다른 두 문항은 성별(아들 vs. 딸, 아버지 vs. 어머니, 남편 vs. 아내, 친가 vs. 외가)과 연령(출생순위, 어른 vs. 아이)에 따른 인권 침해의 심각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내**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 표현의 심각성으로 구성되었다. 과거와 현재의 가족에 대한 각각 5문항 모두 ‘전혀 심각하지 않다’(1)에서 ‘매우 심각하다’(4)의 4점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하였고, 아예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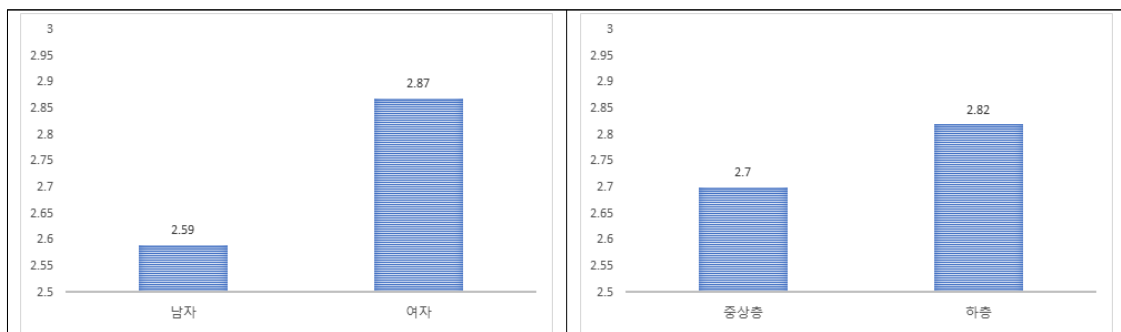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 실태와 관련해서도 유년기 가족과 현재 가족 안에서 다양성에 대한 몰이해나 차별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각각 18개의 항목에 대해 측정하였다. 18가지의 사회적 소수자 속성으로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각각 2문항(여성 vs. 남성, 중·노년 vs. 아동·청소년)과 가족생활주기나 가족형태의 특성에 관한 6문항(임신·출산한 사람, 비혼, 무자녀, 다둥이가정, 한부모가정, 국제결혼)과 함께 종교, 장애, 학력, 인종, 신체조건, 성소수자, 지역, 난민을 이유로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혐오표현이나 차별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측정하였다. 이는 전혀 없음(1)에서 매우 자주 경험(4)한다는 정도 사이에서 해당하는 정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3. 주요 결과

가. 우리 사회의 가족인권 침해에 대한 전반적 인식

우리 사회의 가족인권 침해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 대상자가 느끼는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 내 인권 침해 정도의 심각성에 대해 4점 범위에서(1=전혀 심각하지 않다, 2=심각하지 않다, 3=심각하다, 4=매우 심각하다)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자 특성별 우리 사회 가족관계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준은 <표 IV-2>, [그림 IV-1]과 같다.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부부 간, 부모자녀 간, 형제자매 간, 고부 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차별, 폭력과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 대상자 특성별 응답 결과, 조사 대상자의 우리 사회 가족관계 내 인권 침해 심각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평균값 2.73으로 ‘심각하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2.87점)이 남성(2.59점)에 비해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 내 인권 침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07$, $p<.001$).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가장 심각성 인식 수준(2.88점)이 높았으며, 60대(2.64점)에서 심각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0대, 30대, 40대, 50대는 심각성 인식 수준이 평균 2.70~2.74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심각성 정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특성에 따라서는 ‘하’층으로 응답한 조사 대상자(2.82점)가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 내 인권 침해 문제를 경제적 수준 ‘중(2.70점)’이나 상(2.70점)층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림IV-1] 조사 대상자 특성별 가족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표 IV-2>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전반적 인식

(N = 632)

		Mean (Range1-4)	SD	t/F
전체		2.73	.69	
성별	남자	2.59	.68	t=5.07***
	여자	2.87	.67	
연령	10대	2.70	.79	F=1.51
	20대	2.88	.68	
	30대	2.74	.72	
	40대	2.70	.59	
	50대	2.70	.70	
	60대	2.64	.61	
연령 2	10대	2.70	.79	F=1.81
	20-30대	2.81	.61	
	40-50대	2.70	.70	
	60대 이상	2.64	.64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	중상 이상	2.70	.68	t=-1.84†
	하층	2.82	.72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우리 사회의 가족 내 인권에 대한 심각성 인지에 있어서 성별과 연령대별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IV-3>) 상호작용효과는 없이 성별에 따른 주효과만이 나타났다($F = 28.17$, $p < .001$). 즉, 연령대와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관계에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표 IV-3> 가족인권 침해 심각성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차이

	SS	df	MS	F	p
성별(여성=0)	12.70	1	12.70	28.17	.00
연령대	2.61	3	.87	1.93	.12
성별×연령대	1.69	3	.56	1.25	.29
오차	281.26	624	.45		
전체	297.19	631	.47		

† $p < .1$, * $p < .05$, ** $p < .01$, *** $p < .001$

다만 연령대별로 나누어 가족 내 인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에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4>, [그림 IV-2]과 같다.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 내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였지만 40-50대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10대($t = 3.21$, $p < .01$), 20-30대와($t = 2.72$, $p < .01$) 60대 이상에서는($t = 2.70$, $p < .01$)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그림 IV-2). 여성은 남성에 비해 모든 연령대에서 더 가족 내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성별 격차는 특히 10대에서 두드러졌다. 남성의 경우, 10대 남성이 가족 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고($M = 2.46$) 20-30대 남성이 가족인권 침해에 대해 제일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다($M = 2.69$). 이에 반해 여성의 경우 10대 여성($M = 2.93$)과 20-30대 여성($M = 2.94$)의 차이가 거의 없을 만큼 가족인권 침해에 대한 감수성이 높았다. 그리고 40-50대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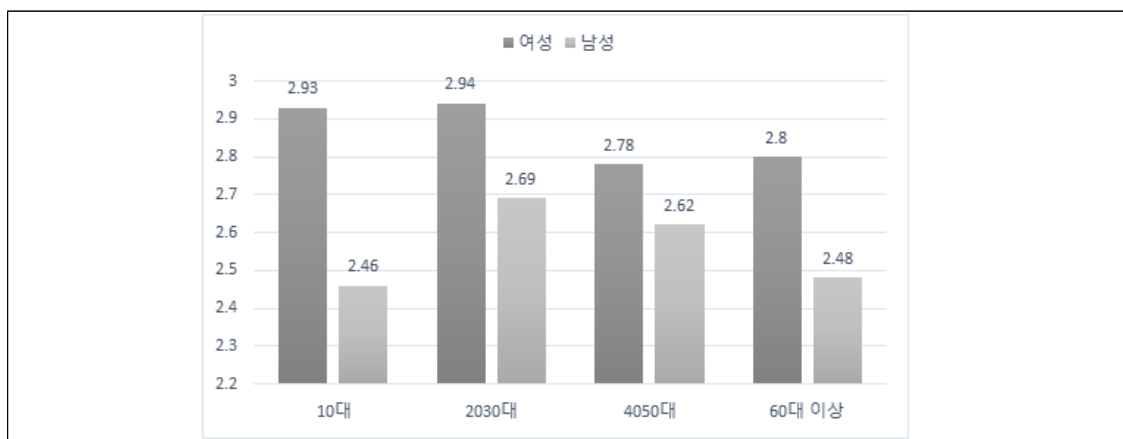
년 여성(M=2.78)이 60대 이상의 여성 노인(M=2.80)들보다 가족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남자 청소년들이 가족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가장 덜 느끼고 그 다음으로 60대 이상의 남성 노인, 40-50대 중년 남성, 20-30대 남성의 순이라는 것은 흥미롭다. 모든 연령대의 여성은 20-30대 남성들보다도 가족인권 침해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고, 여성 중 제일 심각성을 덜 느끼는 연령대는 40-50대 중년 여성이었다. 그 다음이 60대 이상의 여성노인, 그리고 10대와 20-30세대 여성이 가족인권 침해에 관해 심각하게 느낀다는 것은 가족 내 구성원의 암묵적인 위계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가정에서 10대 아들이나 할아버지는 위계 상 높은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가장 덜 받고, 여성의 생애에서는 엄마일 때 여성노인이나 젊은 여성일 때보다 가족 내에서는 안정적이고 입지를 가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인권교육과 젠더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교육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10대부터 30대까지의 여성들의 인권의식이 가장 높은 것일 수 있다.

<표 IV-4> 연령대별, 성별 가족 내 인권에 대한 심각성 인식의 차이

		여성	남성	t
연령 대	10대	2.93	2.46	3.21**
	20-30대	2.94	2.69	2.72**
	40-50대	2.78	2.62	1.86†
	60대 이상	2.80	2.48	2.70**

† $p < .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2] 연령대별 성별에 따른 가족인권 침해의 심각성 인식

나. 우리 사회의 가족 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의 가족 안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사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가족 안에서 표현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차별, 언어적 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전혀 심각

하지 않다(1), 심각하지 않다(2), 심각하다(3), 매우 심각하다(4))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자 특성별 우리 사회의 가족 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사용 정도 전반적 인식 수준 결과는 <표 IV-5>와 같다. 우리 사회의 가족 내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사용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평균 2.93점으로 '심각하다'에 가까웠다. 조사 대상자들은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M=2.73) 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가족 안에서 차별 표현과 편견을 보이는 정도가 좀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M=2.93).

조사 대상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3.06점)이 남성(2.80점)보다 우리 사회의 가족 내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사용을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4.89$, $p<.001$). 연령대별로는 심각성 인식 정도가 연령대 별 평균 2.88-3.0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대가 가장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고(M=3.01), 60대의 경우 2.88점으로 각 연령대 중에서 가장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표 IV-5> 우리 사회의 가족 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사용 정도 인식 수준

(N = 632)

		Mean (Range1-4)	SD	t/F
전체		2.93	.67	
성별	남자	2.80	.68	$t=4.89^{***}$
	여자	3.06	.64	
연령	10대	2.89	.83	$F=.67$
	20대	3.01	.74	
	30대	2.90	.67	
	40대	2.96	.53	
	50대	2.90	.63	
	60대	2.88	.59	
연령 2	10대	2.89	.83	$F=.46$
	20-30대	2.96	.71	
	40-50대	2.93	.58	
	60대 이상	2.88	.59	

† $p<.1$, * $p<.05$, ** $p<.01$, *** $p<.001$

가족 안에서 표현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차별, 언어적 폭력의 심각성에 있어서 성별, 연령대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지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IV-6>),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였다($F=2.95$, $p<.05$). 여성의 경우 20-30세대가 가장 민감하게 심각성을 인지한 데에 반하여 남성의 경우 40-50세대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민감하게 심각성을 인지하였다.

<표 IV-6> 가족의 사회소수자에 대한 편견 생산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차이

	SS	df	MS	F	p
성별(여성=0)	8.93	1	8.93	20.52	.00
연령대	.71	3	.24	0.54	.65
성별×연령대	3.86	3	1.29	2.95	.03
오차	271.61	624	.44		
전체	286.65	631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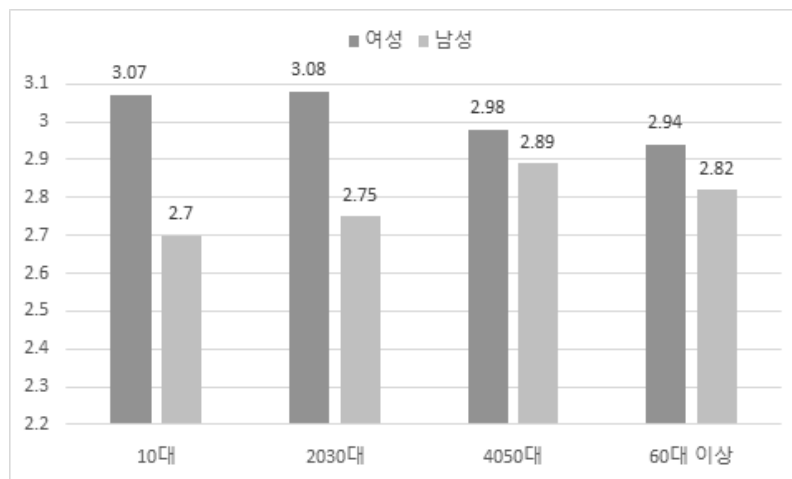
† $p<.1$, * $p<.05$, ** $p<.01$, *** $p<.001$

연령대별로 나누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표현이나 편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7>, [그림 IV-3]과 같다.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표현, 편견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고, 40-50세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10대($t=2.37$, $p<.05$), 20-30대에서는($t=4.67$, $p<.00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가족 편견의 심각성에 대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그림 IV-3). 10대나 20-30세대의 남성들보다 10대 및 20-30세대 여성들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가족 편견이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차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컸는데, 이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인권교육이나 젠더교육의 수혜자로서 10대와 20-30대의 젊은 세대가 인권의식이 높은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의 향상이 여성에서만 남성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상을 보내는 가정에서의 인권 침해나 편견, 차별표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10대나 20-30대 남성의 경우 40-50대 중년의 여성들보다도 민감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적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V-7> 연령대별, 성별 가족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편견의 심각성 인지의 차이

		여성	남성	<i>t</i>
연령 대	10대	3.07	2.70	2.37*
	20-30대	3.08	2.75	4.67***
	40-50대	2.98	2.89	1.14
	60대 이상	2.94	2.82	1.02

† $p<.1$, * $p<.05$, ** $p<.01$, *** $p<.001$



[그림 IV-3] 연령대별, 성별에 따른 가족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

다. 주제별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 인식

교육 주제별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은 10가지 교육 주제에 대하여 각각 ‘전혀 필요하지 않다(1)’부터 ‘매우 필요하다(4)’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각 교육 주제별 교육 필요성 인식 평균은 3.19-3.31점으로 모든 주제에 대하여 ‘필요하다’ 이상의 인식을 나타냈다.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성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결과 10가지 모든 주제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IV-8〉).

전체 응답자들은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생각할 때,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에서 평등과 존중을 위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제일 동의하였고($M=3.31$), 자녀들 역시 부모자녀관계에서 인권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M=3.28$). 즉, 가족인권교육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은 부모자녀관계 속에서 평등과 존중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평균적으로 필요성 점수가 높은 것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과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에 대한 교육이 동점으로 높았다. 다음으로는 돌봄을 담당하는 양육자나 가족 간병인에 대한 존중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부부간, 인척간 평등 및 존중 교육 순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세대 이해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이 가족인권교육의 내용으로서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순위는 성차를 보였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인척간과 부부간과 같은 가족관계에서 평등과 존중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3,4순위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부부관계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t=6.64, p<.001$).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부모자녀관계 외의 가족관계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덜 높게 인식하였고,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표 IV-8> 주제별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 인식

(N = 632)

	순 위	전체		여자		남자		t/F
		Mean	SD	Mean	SD	Mean	SD	
부부간의 평등과 존중을 위한 교육	6	3.23	.58	3.39	.55	3.09	.57	6.64***
부모자녀 간의 평등과 존중을 부모대상 의 교육	1	3.31	.61	3.45	.59	3.17	.60	5.83***
부모자녀 간의 평등과 존중을 자녀대상 의 교육	2	3.28	.60	3.37	.61	3.18	.57	4.00***
인척 간 (시부모-며느리, 장인장모-사위, 동서)의 평등과 존중을 위한 교육	7	3.22	.65	3.40	.61	3.04	.64	7.17***
다른 세대 간 (자녀세대, 부모세대, 조부모세대)의 평등과 존중을 위한 교육	9	3.20	.64	3.32	.62	3.08	.63	6.85***
성별 에 간(아들과 딸,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남편, 친가와 외가)의 평등과 존중을 위한 교육	10	3.19	.63	3.36	.61	3.02	.61	6.85***
가정 내 돌봄을 받는 사람(아이, 노인, 장애인)의 평등과 존중을 위한 교육	8	3.21	.61	3.33	.61	3.10	.60	4.84***
가정 내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양육자, 가족 간 병인 등)의 평등과 존중을 위한 교육	5	3.25	.61	3.35	.60	3.16	.61	4.09***
다양한 모습의 가족 (싱글, 동거가족, 무자녀가족,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평등과 존중을 위한 교육	3	3.27	.60	3.41	.58	3.13	.59	5.8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3	3.27	.60	3.40	.56	3.13	.60	5.83***

† $p < .1$, * $p < .05$, ** $p < .01$, *** $p < .001$

1) 부부 인권교육의 필요성

조사대상자 특성별로 각 주제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부부간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대상자 특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9>와 같다. 부부교육에 있어서는 여성은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M=3.38, SD=.56) 남성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편이었다(M=3.09, SD=.57). 연령대에 있어서는 20대가 부부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M=3.34, SD=.51), 60대 이상의 경우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적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3.07, SD=.67).

<표 IV-9> 부부간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N = 632)

		Mean (Range1-4)	SD	t/F
전체		3.23	.58	
성별	남자	3.09	.57	t=6.64***
	여자	3.38	.56	
연령	10대	3.22	.61	F=3.02**
	20대	3.34	.51	
	30대	3.32	.60	
	40대	3.25	.51	
	50대	3.19	.54	
	60대	3.07	.67	
연령 2	10대	3.22	.61	F=4.88**
	20-30대	3.33	.56	
	40-50대	3.22	.53	
	60대 이상	3.07	.67	

† $p < .1$, * $p < .05$, ** $p < .01$, *** $p < .001$

부부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지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IV-10〉), 성별과 연령의 주효과는 있었으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9.24$, $p<.001$).

〈표 IV-10〉 부부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차이

	SS	df	MS	F	p
성별(여성=0)	10.09	1	10.09	32.59	.000
연령대	4.94	3	1.65	5.31	.001
성별×연령대	1.17	3	.39	1.26	.288
오차	193.30	624	.31		
전체	213.34	631	.34		

† $p<.1$, * $p<.05$, ** $p<.01$, *** $p<.001$

연령대별로 나누어 부부인권교육의 필요성에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부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고, 특히 20-30세대와 40-50세대 사이의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94$; $t=5.19$, $p<.001$). 20대에서 50대까지는 현재 부부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현재 부부생활을 하는 아내들이 부부 상호 간의 존중과 평등 교육이 필요함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남편들의 그러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부부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남성들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V-11〉 연령대별, 성별 부부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여성	남성	t
연령 대	10대	3.29	3.15	1.22
	20-30대	3.51	3.16	4.94***
	40-50대	3.40	3.05	5.19***
	60대 이상	3.18	2.96	1.65

† $p<.1$, * $p<.05$, ** $p<.01$, *** $p<.001$

2) 부모 대상 부모자녀관계 인권교육의 필요성

조사대상자 특성별로 부모 대상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표 IV-12〉), 성차와 함께 연령에 따른 부모대상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대상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t=5.83$, $p<.001$). 연령별로는 가장 연령이 높은 60대 이상에게서는 부모 대상의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적게 드러난 반면($M=3.10$, $SD=.60$), 20대에게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교육 수혜경험이 있는 10대와 20대의 인권의식이 높은 상황에서, 10대 청소년 자녀나 20대 성인 자녀는 부모들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표 IV-12〉 부모 대상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N = 632)

		Mean (Range1-4)	SD	t/F
전체		3.31	.59	
성별	남자	3.17	.60	5.83***
	여자	3.45	.59	
연령	10대	3.30 bc	.69	6.55***
	20대	3.55 c	.54	
	30대	3.38 bc	.63	
	40대	3.27 ab	.53	
	50대	3.23 ab	.54	
	60대	3.10 a	.66	
연령 2	10대	3.30 ab	.69	9.44***
	20-30대	3.46 b	.59	
	40-50대	3.25 a	.53	
	60대 이상	3.10 a	.66	

† $p < .1$, * $p < .05$, ** $p < .01$, *** $p < .001$

부모 대상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지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IV-13〉), 성별과 연령의 주효과는 있었으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9.99$, $p < .001$).

〈표 IV-13〉 부모 대상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차이

	SS	df	MS	F	p
성별(여성=0)	9.11	1	9.11	26.69	.000
연령대	10.32	3	3.44	10.08	.000
성별×연령대	1.50	3	.50	1.46	.223
오차	212.97	624	.34		
전체	236.83	631	.38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연령대별로 나누어 부모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대상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으나 60대 이상의 노인 여성은($M=3.16$) 10대~30대 남성들보다 필요성을 낮게 느끼고 있었다.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부모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에 있어서의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2.07$, $p < .05$; $t=5.25$, $p < .001$; $t=3.24$, $p < .01$).

〈표 IV-14〉 연령대별, 성별 부모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여성	남성	t
연령 대	10대	3.43	3.17	2.07*
	20-30대	3.67	3.27	5.25***
	40-50대	3.37	3.14	3.24**
	60대 이상	3.16	3.04	0.30

† $p < .1$, * $p < .05$, ** $p < .01$, *** $p < .001$

3) 자녀 대상 부모자녀관계 인권교육의 필요성

조사대상자 특성별 자녀 대상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결과이다(〈표 IV-15〉). 여성의 경우 인권교육에 대한 의식이 높다는($t=3.40$, $p<.001$) 일관된 특성을 제외하고는 자녀 대상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른 인권교육에 비해 약한 편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제와 달리 연령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84$, ns).

〈표 IV-15〉 조사대상자 특성별 자녀 대상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N = 632)

		Mean (Range1-4)	SD	t/F
전체		3.28	.60	
성별	남자	3.18	.57	3.40***
	여자	3.37	.61	
연령	10대	3.28	.64	1.32
	20대	3.38	.58	
	30대	3.29	.60	
	40대	3.26	.54	
	50대	3.27	.56	
	60대	3.17	.65	
연령 2	10대	3.28	.69	1.84
	20-30대	3.34	.59	
	40-50대	3.27	.53	
	60대 이상	3.17	.66	

† $p<.1$, * $p<.05$, ** $p<.01$, *** $p<.001$

4) 인척 간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척 간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표 IV-16〉과 같다. 다른 교육 주제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인척 간 평등과 존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7.17$, $p<.001$).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20대와 60대 사이($F=2.64$, $p<.05$). 20-30세대와 60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4.00$, $p<.01$). 즉, 20-30세대의 젊은 층에서는 인척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약했다.

<표 IV-16> 인척 간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N = 632)

		Mean (Range1-4)	SD	t/F
전체		3.22	.65	
성별	남자	3.04	.57	7.17***
	여자	3.40	.61	
연령	10대	3.21ab	.73	2.64*
	20대	3.36a	.63	
	30대	3.29ab	.69	
	40대	3.23ab	.62	
	50대	3.16ab	.56	
	60대	3.06b	.62	
연령 2	10대	3.21ab	.73	4.00**
	20-30대	3.32a	.66	
	40-50대	3.20ab	.59	
	60대 이상	3.06b	.62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인척 관계에 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지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IV-17>), 성별과 연령의 주효과는 있었으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9.96$, $p < .001$).

<표 IV-17> 인척관계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차이

	SS	df	MS	F	p
성별(여성=0)	16.01	1	16.01	41.70	0.000
연령대	5.10	3	1.70	4.42	0.004
성별×연령대	1.59	3	0.53	1.38	0.248
오차	239.65	624	0.38		
전체	266.43	631	0.43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연령대별로 나누어 인척 관계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18>과 같다. 여성이 남성보다 인척관계 관련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고, 10대와 20-30세대의 여성은 ‘필요하다’(3점)와 ‘매우 필요하다’(4점)의 중간값 정도로 필요성을 느낀 반면(10대: 3.42점, 20-30대: 3.55점), 남성의 경우에는 ‘필요하다’ 정도에 그쳤다(10대: 3점, 20-30대: 3.1점). 또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09$, $p < .01$; $t=5.28$, $p < .001$). 40-50세대도 여성의 경우 필요성을 남성보다 더 많이 느끼는 편이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였으나(여성: 3.36점, 남성: 3.04점; $t=4.14$, $p < .001$), 젊은 세대들에 비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는 낮았다. 60대 이상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낮아지며 남녀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도 않았다($t=1.30$, ns). 인척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인권 침해,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여성이 더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결혼을 생각하는 연령이거나 결혼을 하고 10년 이내에 속하는 20-30세대의 여성이 가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

다. 이에 반하여 남성의 경우에는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특히 10대 남자 청소년의 경우 다른 주제에 비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은 결혼 이후 맺어지는 인척관계에 대한 인식이 10대 여성청소년 보다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들이 커플관계를 맺는 시기에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IV-18〉 연령대별, 성별 인척관계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여성	남성	t
연령 대	10대	3.42	3.00	3.09**
	20-30대	3.55	3.10	5.28***
	40-50대	3.36	3.04	4.14***
	60대 이상	3.14	2.98	1.30

† $p < .1$, * $p < .05$, ** $p < .01$, *** $p < .001$

5) 세대 이해를 통한 인권교육의 필요성

자녀세대는 부모세대를, 부모세대는 자녀세대를 이해하는 식의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표 IV-19〉와 같다. 다른 교육 주제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른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평등과 존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4.95$, $p<.001$). 그러나 연령대에 따라 세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67$; $t=1.60$, ns). 다만, 30대부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교육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소위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젊은 세대 · 자녀 세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덜 하는 것인 만큼, 자녀 세대에게는 불만이 있어도 부모 세대의 변화하려는 동기가 적은 것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IV-19〉 세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Mean (Range1-4)	SD	t/F
전체		3.20	.03	
성별	남자	3.08	.63	4.95***
	여자	3.32	.62	
연령	10대	3.22	.70	1.67
	20대	3.34	.63	
	30대	3.18	.73	
	40대	3.18	.58	
	50대	3.15	.55	
	60대	3.11	.58	
연령 2	10대	3.22	.77	1.60
	20-30대	3.26	.68	
	40-50대	3.17	.57	
	60대 이상	3.11	.58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세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지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IV-20〉), 성별과 연령대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F=5.44$, $p<.001$).

〈표 IV-20〉 세대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차이

	SS	df	MS	F	p
성별(여성=0)	5.68	1	5.68	14.75	0.000
연령대	1.94	3	0.65	1.68	0.170
성별×연령대	3.19	3	1.06	2.77	0.041
오차	240.23	624	0.8		
전체	254.88	631	0.40		

† $p<.1$,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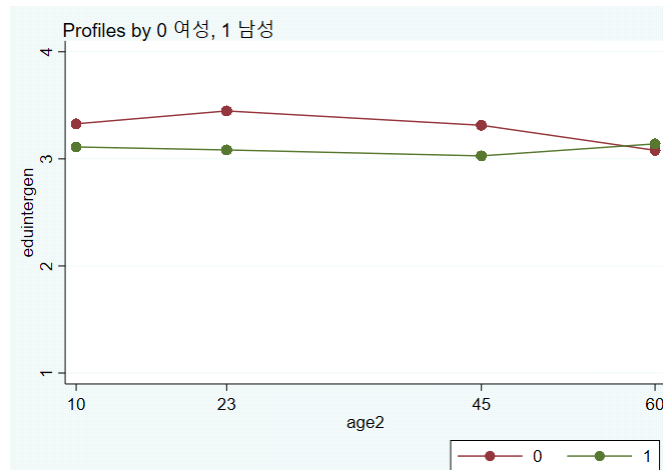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나누어 세대 교육의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1〉과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IV-4]와 같다. 20-30세대의 여성은($M=3.45$) 같은 세대의 남성보다($M=3.08$)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02$, $p<.001$). 40-50세대도 여성의 경우($M=3.31$) 필요성을 남성보다($M=3.03$) 더 많이 느끼는 편이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77$, $p<.001$), 60대 이상에서는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 교육의 필요성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느꼈고 남녀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도 않았다($t=-0.51$, ns).

〈표 IV-21〉 연령대별, 성별 세대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여성	남성	t
연령 대	10대	3.33	3.11	1.63
	20-30대	3.45	3.08	4.02***
	40-50대	3.31	3.03	3.77***
	60대 이상	3.08	3.14	-0.51

† $p<.1$, * $p<.05$, ** $p<.01$, *** $p<.001$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인권교육 주제에 대해서 항상 여성이 남성보다 필요성을 높게 느낀 데에 반하여, 다른 세대의 이해에 대한 교육은 60대 이상의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인권 침해를 받기 쉽다고 느끼는 집단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더 높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60대 이상의 남성 노인이 다른 세대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림 IV-4] 세대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령대와 성별의 상호작용

6) 가족 젠더 교육의 필요성

가정에서의 친가와 외가, 아들과 딸,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가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 문제에 대한 젠더 교육이 필요한지에 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2>와 같다. 여성들은 평균적으로($M=3.36$)이 남성에 비해($M=3.02$) 가족생활에서의 젠더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t=6.85, p<.001$).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가족생활의 젠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0대는 평균 3.35점, 20대는 평균 3.31점인데 반하여 30-40대는 평균 3.19점, 50대는 평균 3.05점, 60대 이상은 평균 3.01점을 보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5.00, p<.01$).

<표 IV-22> 젠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Mean (Range1-4)	SD	t/F
전체		3.19	.63	
성별	남자	3.02	.61	6.85***
	여자	3.36	.61	
연령	10대	3.35	.66	5.00**
	20대	3.31	.64	
	30대	3.19	.71	
	40대	3.19	.55	
	50대	3.05	.60	
	60대 이상	3.01	.58	
연령 2	10대	3.35	.66	6.71**
	20-30대	3.25	.67	
	40-50대	3.12	.58	
	60대 이상	3.01	.58	

† $p<.1$, * $p<.05$, ** $p<.01$, *** $p<.001$

가족생활 젠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지 이원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IV-23〉), 성별과 연령의 주효과는 있었으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10.33$, $p<.001$).

〈표 IV-23〉 가족생활에서의 젠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차이

	SS	df	MS	F	p
성별(여성=0)	14.47	1	14.47	39.66	0.000
연령대	7.82	3	2.61	7.15	0.000
성별×연령대	0.98	3	0.33	0.90	0.441
오차	227.60	624	0.36		
전체	253.97	631	0.40		

† $p<.1$, * $p<.05$, ** $p<.01$, *** $p<.001$

연령대별로 나누어 가족생활에서의 젠더교육의 필요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4〉와 같다.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생활에서의 젠더교육의 필요성을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했다, 또한 남녀 모두 젊은 연령대일수록 젠더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표 IV-24〉 연령대별, 성별 가족생활 젠더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여성	남성	t
연령 대	10대	3.51	3.19	2.64**
	20-30대	3.48	3.04	5.02***
	40-50대	3.25	2.99	3.39***
	60대 이상	3.14	2.88	2.30*

† $p<.1$, * $p<.05$, ** $p<.01$, *** $p<.001$

7) 돌봄 수혜자 인권교육의 필요성

가정 내에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과 같은 돌봄을 받는 가족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IV-25〉와 같다. 다른 주제의 인권교육과 마찬가지로 여성 응답자가($M=3.33$) 남성 응답자에 비해($M=3.10$) 돌봄 수혜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였다($t=4.84$, $p<.001$). 그러나 연령대별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대부분 젊은 세대일수록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데에 반하여 돌봄수혜자의 인권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10대나($M=3.25$) 20대보다도($M=3.23$) 30대에게서 제일 높게 나타났으나($M=3.30$),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래도 표본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데에는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영유아를 양육하는 시기에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데에 있어서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교육이 가족생활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연령대이기 때문일 수 있다.

<표 IV-25> 돌봄수혜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N = 632)

		Mean (Range1-4)	SD	t/F
전체		3.21	.62	
성별	남자	3.10	.60	4.84***
	여자	3.33	.61	
연령	10대	3.25	.68	1.65
	20대	3.23	.57	
	30대	3.30	.62	
	40대	3.21	.55	
	50대	3.20	.66	
	60대	3.07	.59	
연령 2	10대	3.25	.66	2.50
	20-30대	3.27	.67	
	40-50대	3.20	.58	
	60대 이상	3.07	.58	

† $p < .1$, * $p < .05$, ** $p < .01$, *** $p < .001$

가정 안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한가에 관해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지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IV-23>), 성별과 연령의 주효과는 있었으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5.03$, $p < .001$).

<표 IV-26> 돌봄수혜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차이

	SS	df	MS	F	p
성별(여성=0)	3.24	1	6.24	17.16	0.000
연령대	2.87	3	0.96	2.63	0.049
성별×연령대	1.35	3	0.45	1.24	0.294
오차	226.79	624	0.36		
전체	239.59	631	0.38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연령대별로 나누어 돌봄수혜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7>과 같다. 여성이 남성보다 돌봄수혜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고, 특히 20대부터 50대까지의 청장년층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를 보였다($t=4.53$, $p < .001$; $t=2.34$, $p < .05$), 여성의 경우에는 20-30세대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연령대의 여성보다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40-50세대가 20-30세대보다 **도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를 느꼈다. 이는 남성에게는 20-30세대보다 40-50세대가 아이든 노부모이든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기 **쉬우므로** 일상에서 돌봄 수혜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일 수 있다.

〈표 IV-27〉 연령대별, 성별 돌봄수혜자 위한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여성	남성	t
연령 대	10대	3.35	3.15	1.51
	20-30대	3.45	3.09	4.53***
	40-50대	3.30	3.11	2.34*
	60대 이상	3.12	3.02	0.85

† $p < .1$, * $p < .05$, ** $p < .01$, *** $p < .001$

8) 돌봄제공자 인권교육의 필요성

가정 안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가족을 간병하는 돌봄 제공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표 IV-28〉과 같다. 다른 주제의 인권교육과 마찬가지로 여성 응답자가 ($M=3.35$) 남성 응답자에 비해($M=3.16$) 돌봄 제공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t=4.09$, $p<.001$). 연령대별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40대와 6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돌봄제공자의 인권에 대한 필요성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28〉 돌봄 제공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N = 632$)

		Mean (Range1-4)	SD	t/F
전체		3.25	.61	
성별	남자	3.16	.61	4.09***
	여자	3.35	.60	
연령	10대	3.28	.67	1.37
	20대	3.32	.54	
	30대	3.31	.64	
	40대	3.19	.57	
	50대	3.25	.59	
	60대	3.15	.64	
연령 2	10대	3.28	.67	2.11
	20-30대	3.32	.59	
	40-50대	3.22	.58	
	60대 이상	3.15	.64	

† $p < .1$, * $p < .05$, ** $p < .01$, *** $p < .001$

가정 안에서 양육이나 부양, 간병 등을 담당하는 돌봄제공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이 필요한가에 관해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지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IV-29〉), 성별에 따른 주효과만이 존재하였다($F=3.93$, $p<.001$).

〈표 IV-29〉 돌봄제공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차이

	SS	df	MS	F	p
성별(여성=0)	4.14	1	4.14	11.45	0.001
연령대	2.35	3	0.78	2.17	0.091
성별×연령대	1.51	3	0.50	1.40	0.242
오차	225.55	624	0.36		
전체	235.49	631	0.37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연령대별로 나누어 돌봄제공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30>과 같다.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남성보다 돌봄제공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고, 특히 20대부터 50대까지의 청장년층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를 보였다($t=3.44$, $p<.001$; $t=2.58$, $p<.01$), 그리고 남녀 모두 20-30세대가 돌봄제공자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고, 이는 이 연령대가 돌봄 제공을 많이 하는 세대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특히 20-30세대 여성의 경우 주양육자와 같은 돌봄제공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평균 3.5로 '필요하다(3)'와 '매우 필요하다(4)'의 사이의 중간값 정도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었다.

<표 IV-30> 연령대별, 성별 돌봄제공자를 위한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여성	남성	t
연령 대	10대	3.40	3.17	1.84
	20-30대	3.46	3.19	3.44***
	40-50대	3.32	3.12	2.58**
	60대 이상	3.14	3.16	-0.16

† $p<.1$, * $p<.05$, ** $p<.01$, *** $p<.001$

9) 다양한 가족 이해를 통한 인권교육의 필요성

싱글이나 동거가족, 무자녀가족이나 다문화가족과 같은 다양한 모습의 가족에 대한 평등과 존중을 위한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31>과 같다. 여성이($M=3.41$) 남성에 비해($M=3.13$)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가족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느끼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t=5.85$, $p<.001$).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다양한 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t=2.31$, $p<.05$; $t=3.37$, $p<.05$).

<표 IV-3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N = 632$)

		Mean (Range1-4)	SD	t/F
전체		3.27	.60	
성별	남자	3.13	.59	5.85***
	여자	3.41	.58	
연령	10대	3.37	.62	2.31*
	20대	3.33	.61	
	30대	3.30	.66	
	40대	3.28	.60	
	50대	3.19	.58	
	60대	3.13	.51	
연령 2	10대	3.37	.62	3.37*
	20-30대	3.31	.64	
	40-50대	3.24	.59	
	60대 이상	3.13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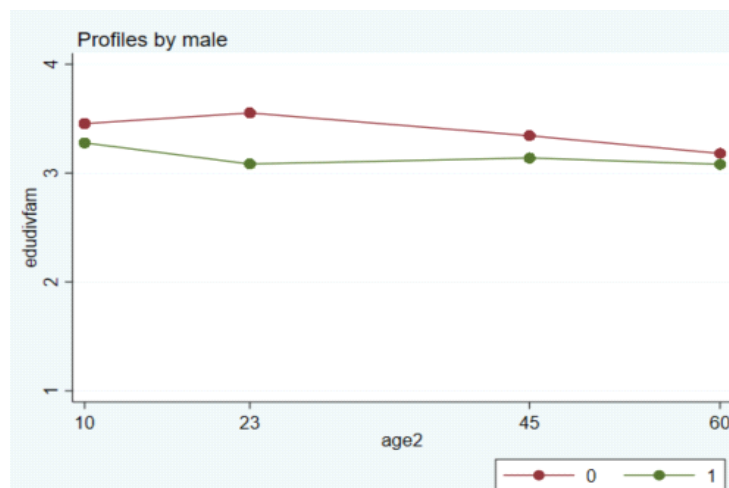
† $p<.1$, * $p<.05$, ** $p<.01$, *** $p<.001$

다양한 가족 이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지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IV-32〉), 성별과 연령대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F=5.44$, $p<.001$).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IV-5]와 같다.

〈표 IV-3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차이

	SS	df	MS	F	p
성별(여성=0)	7.88	1	7.88	23.45	0.000
연령대	3.63	3	1.21	3.60	0.013
성별×연령대	3.29	3	1.10	3.27	0.021
오차	209.65	624	0.34		
전체	228.27	631	0.36		

† $p<.1$, * $p<.05$, ** $p<.01$, *** $p<.001$



[그림 IV-5] 연령별, 성별에 따른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연령대별로 나누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33〉과 같다. 20-30세대의 여성은($M=3.55$) 같은 세대의 남성보다($M=3.08$)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5.77$, $p<.001$). 40-50세대도 여성의 경우($M=3.34$) 필요성을 남성보다($M=3.14$) 더 많이 느끼는 편이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55$, $p<.01$), 1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1.50$, ns; $t=0.99$, ns).

〈표 IV-33〉 연령대별, 성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여성	남성	t
연령 대	10대	3.45	3.28	1.50
	20-30대	3.55	3.08	5.77**
	40-50대	3.34	3.14	2.55**
	60대 이상	3.18	3.08	0.99

† $p<.1$, * $p<.05$, ** $p<.01$, *** $p<.001$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 만큼 정형화된 가족생활주기나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가족을 선택하여 꾸릴 수 있는 시기에 있는 20-30세대가 다양한 가족의 모습에 대한 존중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10) 전반적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

우리 사회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가족인권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결과는 <표 IV-34>와 같다. 앞서 주제별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났듯이, 전반적인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여성은($M=3.41$) 남성에 비해($M=3.13$) 필요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인지하였다($t=5.83$, $p<.001$). 연령대별로는 20대($M=3.42$)와 30대에서($M=3.35$)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지하였고, 10대($M=3.31$), 40대($M=3.22$), 50대($M=3.15$), 60대($M=3.14$)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t=3.81$, $p<.05$).

<표 IV-34> 전반적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Mean (Range1-4)	SD	t/F
전체		3.27	.60	
성별	남자	3.13	.60	5.83***
	여자	3.41	.56	
연령	10대	3.31	.60	3.81*
	20대	3.42	.58	
	30대	3.35	.68	
	40대	3.22	.57	
	50대	3.15	.52	
	60대	3.14	.57	
연령 2	10대	3.31	.60	5.95**
	20-30대	3.38	.63	
	40-50대	3.19	.54	
	60대 이상	3.14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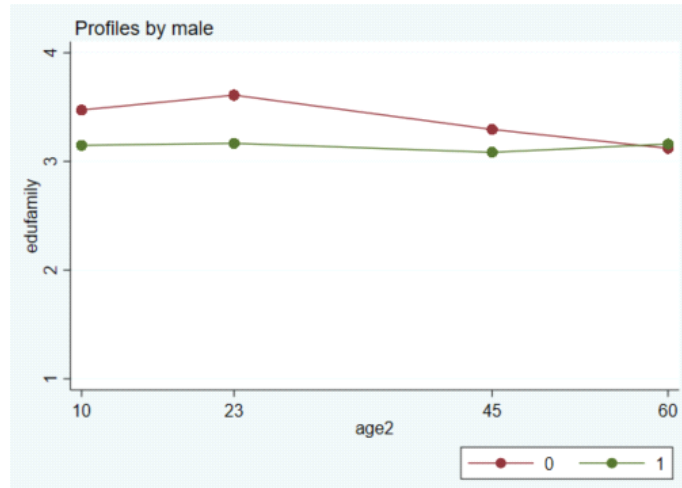
† $p<.1$, * $p<.05$, ** $p<.01$, *** $p<.001$

전반적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지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IV-35>), 성별과 연령대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F=9.65$, $p<.001$). 20-30세대의 경우 전반적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고, 10대의 경우에도 성차가 큰 편이었으나 40대 이상으로 가면서는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6>).

<표 IV-35> 전반적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차이

	SS	df	MS	F	p
성별(여성=0)	7.68	1	7.68	23.75	0.000
연령대	6.22	3	2.07	6.41	0.000
성별×연령대	4.26	3	1.42	4.39	0.005
오차	201.94	624	0.32		
전체	223.81	631	0.35		

† $p < .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6] 연령별, 성별에 따른 전반적 가족인권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연령대별로 나누어 전반적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36>과 같다. 20-30세대의 여성은($M=3.61$) 같은 세대의 남성보다($M=3.17$)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5.46$, $p<.001$). 10대의 경우도 여자 청소년이($M=3.47$) 남자청소년에 비해($M=3.15$) 전반적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느꼈고($t=2.90$, $p<.01$), 40-50세대 역시 여성의 경우($M=3.29$) 필요성을 남성보다($M=3.08$) 더 많이 느끼는 편이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55$, $p<.01$), 60대 이상에서는 세대교육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보다($M=3.12$) 남성이($M=3.16$)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0.35$, ns).

<표 IV-36> 연령대별, 성별 전반적 가족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여성	남성	t
연령 대 10대	3.47	3.15	2.90**
20-30대	3.61	3.17	5.46***
40-50대	3.29	3.08	2.86**
60대 이상	3.12	3.16	-0.35

† $p < .1$, * $p < .05$, ** $p < .01$, *** $p < .001$

라. 가족 내 인권 침해 실태

응답자들의 유년기(15세 이전)와 현재의 가족 안에서 가족관계(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인권 침해의 심각성,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별이나 인권 침해, 마지막으로 **가족 내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 표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이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37>과 같다.

<표 IV-37> 유년기와 현재의 가족인권 침해의 실태

(N = 632)

	전체 Mean	여성 Mean	남성 Mean	t
유년기 가족				
부부간 인권 침해	2.09	2.12	2.06	0.75
부모자녀 간 인권 침해	2.00	1.99	2.02	-0.39
성별에 따른 차별	2.03	2.11	1.96	2.01*
연령에 따른 차별	1.95	1.93	1.98	-0.66
사회적 소수자 차별	1.94	2.05	1.85	2.34*
현재 가족				
부부간 인권 침해	1.58	1.59	1.58	0.17
부모자녀 간 인권 침해	1.62	1.64	1.59	0.77
성별에 따른 차별	1.58	1.63	1.54	1.41
연령에 따른 차별	1.55	1.52	1.57	-0.63
사회적 소수자 차별	1.59	1.61	1.56	0.68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유년기에 자신의 가정에서의 인권 침해의 심각성에 관해서는 ‘해당없음(0)’에서 ‘매우 심각하다(4점)’ 중에 평균 1.94점에서 2.09점에 해당하여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인권 침해가 존재하는 정도이었다. 그 중에서 부모님 간(부부간)의 인권 침해 심각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M=2.09), 성별에 따른 차별(M=2.03), 부모자녀 간의 인권 침해(M=2.00), 연령에 따른 차별(M=1.95)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M=1.94) 순이었다. 이 중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t=2.01$; $t=2.34$, $p < .05$) 여성응답자들이(M=2.11, M=2.05) 남성응답자들에 비해(M=1.96, M=1.85) 본인의 가정에서 이러한 차별이 조금은 심각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가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현재의 가정에서는 가정 내의 인권 침해가 전혀 심각하지 않다(1)와 심각하지 않다(2)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1.55점에서 1.62점 사이를 차지하여 유년시절의 가족에 비해 가족인권이 나아졌음을 알 수 있다.

가정 내의 인권 침해의 실태를 연령대별로 나눠 살펴본 결과는 <표 IV-38>과 같다. 연령이 높을수록 유년기든 현재든 가정에서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지는 않아도 있는 편이고, 60대 이상보다는 40-50세대에서 가정 내의 인권 침해의 심각성 수준이 제일 높은 경향을 보였다. 유년기 가족에 있어서는 10대에 비해 2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부부간 인권 침해와 부모자녀간의 인권 침해, 연령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지는 않아도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현재 가족에 있어서는 10대와 20대의 가족인권 침해의

심각성 수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40대 이상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10대부터 30대까지는 가족인권 침해가 심각하지 않았으나 40대 이상부터는 부부간의 인권 침해가 존재는 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심각하지는 않아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8> 연령대별 가족인권 침해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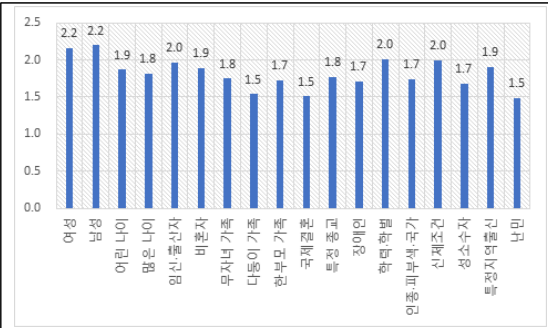
(N = 632)

	10대 Mean	20-30대 Mean	40-50대 Mean	60대 이상 Mean	F
유년기 가족					
부부간 인권 침해	1.73a	2.10b	2.23b	2.15b	7.11***
부모자녀 간 인권 침해	1.67a	1.99b	2.14b	2.10b	6.78***
성별에 따른 차별	1.75a	1.99ab	2.18b	2.13b	5.38**
연령에 따른 차별	1.61a	1.93b	2.07b	2.12b	8.34***
사회적 소수자 차별	1.49a	1.85b	2.18c	2.17c	13.15***
현재 가족					
부부간 인권 침해	1.37a	1.53ab	1.65b	1.77b	4.82**
부모자녀 간 인권 침해	1.55	1.58	1.67	1.66	0.76
성별에 따른 차별	1.39a	1.54ab	1.65b	1.75b	4.46**
연령에 따른 차별	1.39	1.49	1.63	1.66	3.39
사회적 소수자 차별	1.36a	1.50ab	1.73b	1.71b	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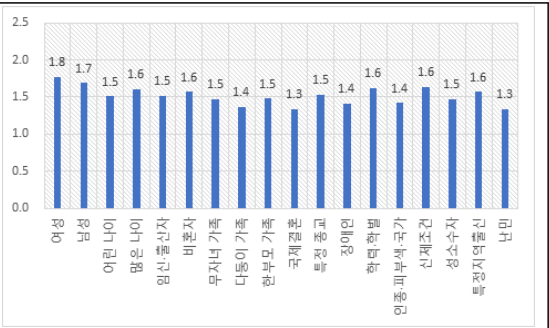
† $p<.1$, * $p<.05$, ** $p<.01$, *** $p<.001$

마. 가족 내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실태

가정 안에서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표현을 어느 정도 경험하였는지의 실태와 관련해서도 유년기 가족과 현재 가족 안에서 다양성에 대한 몰이해나 차별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각각 18개의 항목에 대해 측정하였다. 18가지의 사회적 소수자 속성으로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각각 2문항(여성 vs. 남성, 중·노년 vs. 아동·청소년)과 가족생활 주기나 가족형태의 특성에 관한 6문항(임신·출산한 사람, 비혼, 무자녀, 다둥이가정, 한부모가정, 국제결혼)과 함께 종교, 장애, 학력, 인종, 신체조건, 성소수자, 지역, 난민을 이유로 가족 안에서 중 누군가가 혐오표현이나 차별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그림 IV-7>과 <그림 IV-8>과 같다.



[그림 IV-7] 유년기 가족 내 사회적 편견



[그림 IV-8] 현재 가족 내 사회적 편견

유년기에 가족이 특정한 특성을 가진 대상에 대해 차별이나 혐오표현을 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거나 들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가끔 경험(2)’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가정 내에서 가끔 경험하는 차별이나 편견, 혐오표현으로는 ‘남자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든지 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같은 표현을 제일 많이 접했던 것으로 나타났고($M=2.20$),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 혐오표현을 가정 안에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다음을 차지하였다($M=2.16$), 유년기 가정 내에서의 남녀차별로 인해 어느 한쪽이 피해자이자 소수자로 산 것이 아니라 ‘남자’라는 이유로 가지는 부담이나 차별 또한 여자만큼, 혹은 더 높았다고 인지할 정도로 가정 내의 남녀차별은 남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의 차별은 학력이나 학벌에 의한 차별이나 편견($M=2.01$), 키나 외모와 같은 신체조건과 관련된 차별($M=2.00$), 그리고 임신이나 출산한 사람들에 대해 ‘애엄마라서 그래’라는 식의 차별이나 편견을($M=1.96$) 가끔 경험한 편이라고 하여 다른 특성에 비하여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차별이나 편견이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다둥이 가족과($M=1.54$) 국제결혼($M=1.51$), 난민과 같은 이슈에 관해서는($M=1.49$) 전혀 경험이 없거나(1) 가끔 경험(2) 하는 정도의 중간값 정도로 나타나 차별이나 편견의 원인이 되는 특성은 아닌 편이었다. 이는 응답자의 유년기 시절에는 형제자매가 많은 가족이 특별하지 않았고, 국제결혼이나 난민 이슈는 비교적 최근의 일들로 유년기에 가정 내에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가족의 경우에는 모든 특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빈도가 더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을 가정 안에서 표현하는 것을 가끔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에 가까웠고($M=1.77$), 남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이나 편견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M=1.69$). 전반적으로 가정 내의 차별이나 편견, 혐오표현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년기와 마찬가지로 학력이나 학벌($M=1.62$),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M=1.64$) 차별이나 혐오표현은 여전히 나타나는 편이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표현($M=1.61$), 비혼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표현($M=1.57$)은 상대적으로 현재의 가족생활에서는 부각되는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1) 가정 내 성차별·연령차별

구체적으로 성차별과 연령차별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는 살펴본 결과는 <표Ⅳ-39>와 같다. 응답자들의 유년기 가족에서는 성차별이 컸고 이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경험 차이가 존재하였다. 가정 내의 성차별은 자녀 중 아들과 딸의 차별, 부모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별, 조부모인데 친가와 외가의 차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성 응답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 혐오표현 등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M=2.44$), 남성은 여성에 대한 이러한 차별이나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하는 정도가 약했고($M=1.88$),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8.90$). 반대로 남성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이나 편견을 담은 표현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M=2.27$) 여성에 비해($M=2.1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15$, $p<.05$). 그러나 현재 사는 가정에서

는 어떠한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성차별, 연령차별은 줄어들었으나 여성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이 가정 내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응답하였으나($M=1.99$) 남성들은 덜 인지하고 있었다($M=1.55$). 과거 유년기의 가정에서와는 달리 현재 가정에서는 성별에 따라 남자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에 기초한 표현을 보거나 들었다고 하는 것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58$, ns). 또한 연령차별에 대해서는 과거나 현재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V-39> 성별에 따른 가정 내 성차별, 연령차별의 경험

($N = 632$)

	전체 Mean	여성 Mean	남성 Mean	t
유년기 가족				
여성에 대한	2.16	2.44	1.88	8.90***
남성에 대한	2.20	2.13	2.27	-2.15*
어린 사람에 대한	1.87	1.87	1.87	-0.00
늙은 사람에 대한	1.82	1.86	1.79	0.99
현재 가족				
여성에 대한	1.77	1.99	1.55	7.48***
남성에 대한	1.69	1.64	1.74	-1.58
어린 사람에 대한	1.51	1.49	1.53	-0.62
늙은 사람에 대한	1.61	1.63	1.58	0.71

† $p<.1$, * $p<.05$, ** $p<.01$, *** $p<.001$

성차별과 연령차별이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는 살펴본 결과는 <표IV-40>과 같다. 유년기 가족을 생각했을 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을 표시하는 것은 다른 특성으로 인한 차별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나, 연령대별 차이는 보였다. 10대 응답자는 자신들이 어릴 때에 나이가 들었다고 차별하거나 혐오표현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였으나($M=1.60$) 40-50대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어렸을 때 가정 내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편견이나 차별을 본 적이 있다는 경우가 많았고($M=1.94$), 이러한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F=4.01$, $p<.01$). 그런데 나이든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담은 표현은 현재 가족에서도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는데, 10대는 그러한 차별이 거의 없다고 느끼는 데에 반하여($M=1.33$), 20대 이상부터는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쪽이었다(20-30대, 40-50대: $M=1.62$, 60대 이상: $M=1.83$). 현재 가족에 있어서는 여자라서 차별이나 편견표현을 받는다는 데에 있어서 연령대별 차이는 없었으나 남자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하는 데에 있어서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10대에 비해($M=1.46$) 20-30세대($M=1.79$)와 40-50세대($M=1.73$)의 차별을 보고 들은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가정 내에서 자녀 역할을 맡고 있는 10대들은 아들(남자)이라고 부담을 주거나 편견을 부여하는 것이 거의 없으나 20-30세대나 40-50세대의 남자는 가정 내에서 아버지 혹은 남편의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가지게 되는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표 IV-40> 연령대에 따른 가정 내 성차별, 연령차별의 경험

(N = 632)

	10대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F
	Mean	Mean	Mean	Mean	
유년기 가족					
여성에 대한	2.06	2.17	2.23	2.06	1.51
남성에 대한	2.04	2.23	2.27	2.16	2.18
어린 사람에 대한	1.93	1.90	1.88	1.69	1.64
늙은 사람에 대한	1.60a	1.79ab	1.94b	1.88ab	4.01**
현재 가족					
여성에 대한	1.72	1.82	1.78	1.71	0.59
남성에 대한	1.46a	1.79b	1.73b	1.64ab	5.42***
어린 사람에 대한	1.48	1.57	1.49	1.48	0.63
늙은 사람에 대한	1.33a	1.62b	1.62b	1.83b	7.58***

† $p < .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족생활의 다양성에 대한 가정 내 차별표현

가족생활주기상의 다양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정 내에서 차별이나 편견, 혐오표현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결과는 <표 IV-41>과 같다. 응답자들의 유년기 가족에서는 ‘애엄마라서 저러지’나 ‘아이 가진 사람이면’과 같이 임신이나 출산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편견에 기초한 표현을 여성 응답자들은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M=2.17) 남성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1.77),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5.70$, $p<.001$). 또한 유년기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혐오표현을 여성 응답자의 경우(M=2.00), 남성 응답자보다(M=1.78)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t=2.97$, $p<.01$). 그러나 무자녀나 다둥이, 한부모, 국제결혼에 관해 차별적 표현을 들어본 데에 있어서 성차는 보이지 않았다. 현재 살고 있는 가정에서는 대부분의 가족생활주기 상 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습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았으나 임신·출산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에 따른 표현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여성이(M=1.60) 여전히 남성보다(M=1.44)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t=2.80$, $p<.01$).

<표 IV-41> 성별에 따른 가족생활의 다양성에 대한 차별 경험

(N = 632)

	전체	여성	남성	t
	Mean	Mean	Mean	
유년기 가족				
임신·출산자에 대한	1.97	2.17	1.77	5.70***
비혼자에 대한	1.89	2.00	1.78	2.97**
무자녀 가족에 대한	1.75	1.80	1.70	1.42
다둥이 가족에 대한	1.54	1.54	1.53	0.07
한부모 가족에 대한	1.73	1.79	1.68	1.71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1.51	1.49	1.53	-0.64
현재 가족				
임신·출산자에 대한	1.52	1.60	1.44	2.80**
비혼자에 대한	1.57	1.64	1.51	2.02
무자녀 가족에 대한	1.47	1.48	1.47	0.21
다둥이 가족에 대한	1.37	1.34	1.39	-0.85
한부모 가족에 대한	1.48	1.50	1.46	0.67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1.34	1.32	1.35	-0.70

† $p < .1$, * $p < .05$, ** $p < .01$, *** $p < .001$

가족생활주기 상의 다양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정 내에서 차별이나 편견, 혐오 표현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연령대별 차이는 두드러졌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표Ⅳ-42>와 같다. 각 연령대의 응답자가 유년기(15세 이전) 가족을 떠올렸을 때 자신의 가정에서 임신·출산자, 비혼자, 무자녀가족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혐오표현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가 10대들은 20~50대의 성인들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t=8.38$, $p<.001$; $t=12.95$, $p<.001$; $t=4.81$, $p<.01$). 특히, 그 격차가 두드러진 것은 비혼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현재 10대는 어릴 때 자신의 가정에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비혼자)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듣거나 본 적이 거의 없는 편인데 반하여($M=1.46$), 20-30세대($M=2.06$)와 40-50세대($M=2.00$)는 어린 시절 비혼자에 대해 가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응답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2.95$, $p<.001$). 그리고 10대는 국제결혼한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M=1.28$), 이에 반하여 이들의 부모 세대인 40-50세대는 어릴 적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가끔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1.64$). 그리고 이러한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F=6.20$, $p<.001$). 현재 가족에서는 다양한 가족생활의 모습을 선택한 집단에 대해 차별이나 부정적 표현을 하는 경우가 유년기 가족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각 집단에 대한 반응의 연령대별 차이는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현재의 가족에서 임신·출산자, 비혼자, 무자녀가족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혐오표현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 지가 10대들은 20~50대의 성인들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t=5.37$, $p<.01$; $t=13.38$, $p<.001$; $t=6.14$, $p<.001$). 비혼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표현에 있어서는 현재에도 10대($M=1.22$)와 20-30세대($M=1.78$)나 40-50세대는($M=1.60$)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F=13.38$, $p<.001$), 10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비혼과 관련된 문제 있어서 가정 내에서 의견불일치를 보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현재 가정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정적 표현은 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연령대에 따른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F=1.94$, ns).

<표 Ⅳ-42> 연령에 따른 가족생활의 다양성에 대한 차별 경험

($N = 632$)

	10대 Mean	20-30대 Mean	40-50대 Mean	60대 Mean	F
유년기 가족					
임신·출산자에 대한	1.65a	1.97b	2.16b	1.88ab	8.38***
비혼자에 대한	1.46a	2.06c	2.00bc	1.76ab	12.95***
무자녀 가족에 대한	1.49a	1.86b	1.71b	1.69ab	4.81**
다둥이 가족에 대한	1.37a	1.52ab	1.67b	1.51ab	4.09**
한부모 가족에 대한	1.50a	1.75ab	1.86b	1.69ab	4.41**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1.28a	1.47ab	1.64b	1.54ab	6.20***
현재 가족					
임신·출산자에 대한	1.28a	1.54b	1.62b	1.51ab	5.37**
비혼자에 대한	1.22a	1.78c	1.60bc	1.46ab	13.38***
무자녀 가족에 대한	1.22a	1.56b	1.54b	1.43ab	6.14***
다둥이 가족에 대한	1.16a	1.38b	1.44b	1.41b	4.89**
한부모 가족에 대한	1.32	1.52	1.52	1.47	1.94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1.16a	1.36ab	1.36ab	1.44b	3.96**

† $p<.1$, * $p<.05$, ** $p<.01$, *** $p<.001$

3)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가정 내 차별표현

가정 안에서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혐오표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43>과 같다. 유년기 가족 안에서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표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대상은 학력이나 학벌에 있어서 소수자이었고($M=2.01$), 키나 외모와 같은 신체조건에 있어서 취약한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M=2.00$). 다음으로는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평균적으로 가끔 있었고($M=1.91$) 특정 종교($M=1.77$)나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국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그 다음으로 가정에서 많이 생산되는 편견이나 차별이었다($M=1.91$). 가정 안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혐오표현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다만 여성의 경우에는 외모와 같은 신체조건에 기반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M=2.07$)는 것이 특징적이고, 남성($M=1.93$)의 경우에 비해에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91$, $p<.10$). 현재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앞서 살펴본 양상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지만 키나 외모와 같은 신체조건에 대해 차별이나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M=1.64$), 학력이나 학벌에 있어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M=1.62$)이 그 다음으로 유년기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과는 1, 2위 순위가 바뀌었다. 다음으로는 특정지역출신($M=1.57$)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있거나 특정 종교($M=1.53$)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그 다음으로 가정에서 많이 생산되는 편견이나 차별이었다($M=1.47$).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가정 내의 차별표현은 남녀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으나, 유년기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키나 몸무게, 외모와 같은 신체조건에 대해 차별이나 혐오표현을 하는 것을 경험한 경우가 여성($M=1.75$)에게서 남성($M=1.54$)의 경우에 비해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t=3.28$, $p<.01$).

<표 IV-43> 성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가정 내 차별 표현 경험

($N = 632$)

	전체 Mean	여성 Mean	남성 Mean	t
유년기 가족				
특정 종교에 대한	1.77	1.78	1.77	0.15
장애인에 대한	1.71	1.71	1.72	-0.15
학력·학벌에 대한	2.01	2.06	1.96	1.31
인종·피부색·출신국에 대한	1.74	1.73	1.75	-0.18
신체조건에 대한	2.00	2.07	1.93	1.91 [†]
성소수자에 대한	1.68	1.68	1.68	0.02
특정지역출신에 대한	1.91	1.89	1.92	-0.37
난민에 대한	1.49	1.44	1.54	-1.51
현재 가족				
특정 종교에 대한	1.53	1.53	1.54	-0.19
장애인에 대한	1.41	1.38	1.43	-0.97
학력·학벌에 대한	1.62	1.65	1.60	0.71
인종·피부색·출신국에 대한	1.42	1.39	1.45	-1.07
신체조건에 대한	1.64	1.75	1.54	3.28**
성소수자에 대한	1.47	1.46	1.48	-0.37
특정지역출신에 대한	1.57	1.58	1.57	0.28
난민에 대한	1.34	1.31	1.38	-1.23

† $p<.1$, * $p<.05$, ** $p<.01$, *** $p<.001$

가정 안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혐오표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연령대별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는 <표Ⅳ-44>와 같다. 유년기 가족 안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주로 10대와 40-50세대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0대에 비해 40-50대는 유년기에 가정에서 특정 종교에 대해(M=1.55 vs. M=1.87), 장애인에 대해(M= 1.50 vs. M=1.87), 인종·피부색·출신국에 대해(M=1.51 vs. M=1.84), 성소수자에 대해(M=1.43 vs. M=1.75), 특정지역출신에 대해(M=1.47 vs. M=2.08), 난민에 대해(M=1.26 vs. M=1.60) 차별이나 편견, 혐오표현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더 많았고 이러한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가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10대가 40-50세대에 비해 가정에서 특정 종교(M=1.29 vs. M=1.56), 장애인에 대해(M= 1.14 vs. M=1.46), 성소수자에 대해(M=1.22 vs. M=1.51), 특정지역출신에 대해(M=1.20 vs. M=1.68), 난민에 대해(M=1.15 vs. M=1.40) 차별이나 편견, 혐오표현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더 적었고 이러한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10대와 40-50세대가 자녀와 부모 관계로 현재 한 가족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차별표현에 대한 응답이 다른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40-50세대는 제도화된 교육으로서 인권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고 유년기에는 차별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었던 데에 반하여 10대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아 본 세대이므로, 인권교육에서 다루는 성소수자, 지역, 인종, 난민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나쁘다고 인식하고 현재 가정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고 응답한 것일 수 있다. 자녀 세대인 10대와 부모 세대인 40-50세대가 가정 안과 밖에서의 인권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가정 내의 의견 불일치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가족인권교육을 통해 40-50세대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결과는 현재 가족 안에서 가장 차별적 표현의 원인이 되는 학력·학벌이나 신체조건에 관한 부분은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 연령에 걸쳐 학력·학벌이나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가족인권교육에서는 특히 주력해야 할 요소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IV-44> 연령대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 대한 가정 내 차별 표현 경험

(N = 632)

	10대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F
	Mean	Mean	Mean	Mean	
유년기 가족					
특정 종교에 대한	1.55a	1.79ab	1.87b	1.76ab	3.38*
장애인에 대한	1.50a	1.68ab	1.87b	1.68ab	4.67**
학력·학벌에 대한	1.93ab	2.08b	2.10b	1.75a	4.06**
인종·피부색·출신국에 대한	1.51a	1.77ab	1.84b	1.72ab	3.39*
신체조건에 대한	1.93ab	2.14b	1.99ab	1.78a	3.86**
성소수자에 대한	1.43a	1.71ab	1.75b	1.75b	3.47*
특정지역출신에 대한	1.47a	1.94b	2.08b	1.96b	10.75***
난민에 대한	1.26a	1.43ab	1.60b	1.65b	6.43**
현재 가족					
특정 종교에 대한	1.29a	1.60b	1.56b	1.61b	4.48**
장애인에 대한	1.14a	1.44b	1.46b	1.51b	6.69***
학력·학벌에 대한	1.56	1.72	1.59	1.55	1.52
인종·피부색·출신국에 대한	1.23a	1.45ab	1.41ab	1.55b	3.53**
신체조건에 대한	1.54	1.72	1.61	1.65	1.45
성소수자에 대한	1.22	1.54	1.51	1.52	4.58**
특정지역출신에 대한	1.20a	1.60b	1.68b	1.71b	10.43***
난민에 대한	1.15a	1.35ab	1.40b	1.44b	4.48*

† $p < .1$, * $p < .05$, ** $p < .01$, *** $p < .001$

2019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인권교육의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가족인권의 개념과 내용, 범위를 명료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인권교육에 기반을 둔 분석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시민들의 가족과 관련한 인권의식을 파악하여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를 완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인권교육에 기반을 둔 분석들에 대해 가족학, 사회복지학, 인권 현장실무가 총 3인의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보완한 후,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마련을 위한 델파이 조사 결과, ‘가족인권’의 정의는 ‘가족이라는 맥락 속에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라는 정의에 수렴되었으나, ‘가족인권’이라는 용어는 개인이 아닌 가족이라는 집단의 이익이나 권리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따라서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가족인권’ 대신에 ‘가족인권교육’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가족인권교육’은 ‘존중과 책임의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가족의 맥락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보편적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가족 안에서 공유 및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건강하고 포용적인 공동체 문화에 기여하는 교육’이라고 최종안에서는 정의하였다.

교육대상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구성이 교육 프로그램 활용에 있어서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상가족 프레임에 기초한 구분으로 보이면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함께 낮은 내용타당도를 보였기에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상에서는 교육대상에 따른 분류를 삭제하였다. 실제 프로그램이 실시될 때 교육대상에 맞게 핵심개념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구체화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 가족인권교육의 목표와 핵심개념은 높은 내용타당도를 보였다. 가족인권교육의 목표는 가족 내 개인 단위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상대적 관계의 존중, 더 나아가 공동체에 대한 존중으로 구성되었고, 핵심개념은 개인 존중에서는 나와 타인의 권리, 관계 존중에서는 소통과 책임, 공동체 존중에서는 시민의식으로 구성되었다. 교육 목표와 핵심개념을 기준으로 주요 교육내용을 보면, 개인 존중의 나와 타인의 권리 이해라는 핵심개념은 자기의 권리와 다른 가족구성원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관계 존중의 소통과 책임이라는 핵심개념은 가족관계 안에서 공감적인 이해와 수용하는 법, 소통하는 법, 갈등 상황에서 이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존중을 위한 시민의식이라는 핵심개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포용적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가족인권교육을 통해 주시하고 예방해야 하는 주요한 가족인권 문제로는 가

정폭력, 젠더폭력,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등이 있다. 그리고 독립된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될 경우뿐만 아니라 가족생활교육 전반에 있어서 구체적 교육대상에 따라 **가족 내**의 지위나 역할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권리, 돌봄의 제공자나 수혜자 모두 보호받을 권리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그리고 가정의 안과 밖에서 교육받을 권리 등의 인권문제가 고려되어있는지 검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반 시민들의 가족과 관련한 인권의식 및 실태를 파악하여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남녀 63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시민이 인식하는 1) 우리 사회의 가족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2)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유년기와 현재 **가족 내**에서의 3) 인권 침해나 차별의 실태와 4)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표현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의 가족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살펴본 결과, 첫째, 가족관계 내 인권 침해 심각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평균 2.73점(범위 1~4점)으로 ‘심각하다’에 가까웠다.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에 있어서 성차와 연령차가 나타났는데, 우리 사회의 가족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가장 덜 느끼는 집단은 10대 남자 청소년이었고 그 다음이 60대 이상의 남성 노인, 40-50대 중년 남성, 20-30대 남성의 순이었다. 여성은 어느 연령대의 남성들보다도 가족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높게 느끼고 있었고, 10대와 20-30세대 여성이 가족인권 침해에 대해 제일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가족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평균 2.93점(범위 1~4점)으로 ‘심각하다’에 가까웠다. 가족 안에서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표현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관해서 특히 10대와 20-30세대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가족인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는 가족인권교육 중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권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M=3.31), 다음으로 자녀 대상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음을 차지하여(M=3.28), 가족인권교육이 기존의 인권교육과 차별화하여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은 부모자녀관계 속에서 소통과 책임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높은 필요성을 보인 내용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M=3.27)과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에 대한 **교육**(M=3.27)이었다. 다음으로는 돌봄을 담당하는 양육자나 가족간병인에 대한 존중 **교육**(M=3.25)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고, 부부간(M=3.27), 인척 간(M=3.22) 평등 및 존중 교육 순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세대 이해교육**(M=3.20)이나 **양성평등교육**(M=3.19)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성별,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모든 주제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평등과 존중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세대들이 연령이 높은 세대들에 비해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는 양상을 보였다. 10대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세대이고 20-30세대도 젠더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 세대인 만큼 인권 감수성이 40-50세대나 60대 이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생활과 직결된 주제에 있어서는 어린 10대보다도 20-30세대가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20-30세대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돌봄수혜자나 돌봄제공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도 10대나 40대 이상보다 20-30세대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연령대가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시기이고 자녀양육과 같은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이므로 실질적 가족생활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기 때문일 수 있다.

유년기와 현재 가족 내에서의 인권 침해나 차별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유년기 가정에서의 인권 침해는 심각하지는 않아도 존재하였다는 응답이 많았고, 그 중에서 부모님 간(부부간)의 인권 침해 심각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M=2.09$), 성별에 따른 차별($M=2.03$), 부모자녀 간의 인권 침해($M=2.00$), 연령에 따른 차별($M=1.95$)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M=1.94$) 순이었다(범위 0~4). 현재의 가정에서는 인권 침해가 ‘거의 없다’에 가까웠으나($M=1.58$), 그 중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인권 침해와($M=1.62$),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M=1.59$)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표현이 가정 내에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속성으로 성별과 연령을 살펴보았을 때 성차별이 두드러졌는데, 응답자의 유년기 가정에서는 남녀 모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에 속하는 말들을 경험해왔고, 현재의 가정에서는 이러한 차별의 경험 정도가 줄었지만 여전히 여성은 여자라는 이유로($M=1.99$) 남성은 남자라는 이유로($M=1.74$) 차별적 표현이나 편견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은 성차별 표현의 경험 정도를 모든 연령대가 비슷하게 인지하였으나 남성은 20대부터 50대만이 청장년층 가정 안에서 성차별을 경험하는 차이를 보였다. 아들과 딸의 차별은 줄어들었어도 20대 이상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받는 차별적 표현이나 편견은 존재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령차별에 있어서는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현재 가정에서 늙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속성으로 가족생활주기 상의 다양한 선택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10대는 어릴 때 자신의 가정에서 비혼자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듣거나 본 적이 거의 없는 편인데 반하여($M=1.46$), **20-30세대($M=2.06$)**와 40-50세대는($M=2.00$) 유년기에 비혼자에 대해 가끔 차별적 표현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결혼에 대해서도 40-50세대는 10대와 달리 부정적 표현을 가끔은 들어본 적이 있었다. 현재 가족에서는 유년기 가족에 비해서 다양한 가족생활 선택에 대해 차별 표현하는 것이 줄었으나 비혼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표현은 상대적으로 존재하였고, 특히 **20-30세대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속성으로 종교, 장애, 학력, 인종, 신체조건, 성정체성, 지역, 이주(난민)을 살펴보았을 때, 유년기 가정 내에서의 차별은 학력이나 학벌에 의한 것과(M=2.01), 키나 외모와 같은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이(M=2.00) 가장 두드러졌다. 다음으로는 특정지역출신(M=1.91), 특정 종교(M=1.77), 인종이나 피부색(M=1.74)에 의한 차별이 가정 안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혐오표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유사하였으나 키나 외모와 같은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M=1.64)이 학력이나 학벌에 의한 차별(M=1.62)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역(M=1.57), 종교(M=1.53), 성정체성(M=1.47)에 의한 차별 표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주목하거나 제안할 사항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가족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 관련 주제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대체로 청년층이 중노년층보다 민감도가 높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육의 효과이다. 인권교육이나 젠더교육을 받은 여성이나 청년 세대가 남성이나 전 세대에 비해 인권 침해의 심각성이나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인권교육을 통해 가족의 맥락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구성원 모두가 전반적인 인권감수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가족구성원 간의 주요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인권을 침해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결혼·비혼에 관한 차별 경험에 대해 성별, 연령대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자녀세대는 인권교육의 수혜자로서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데에 반하여 부모세대가 인권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가족구성원간의 불화는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이나 기타 지역사회기관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족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가족인권교육에서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부모들이 부모자녀관계 속에서 평등과 존중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족인권교육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고 건강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행될 필요가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대체로 청년층이 중노년층보다 인권 감수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로 가정 내에서의 취약성을 생각할 수 있다. 가정 내에서 여성과 어린이는 위계상 낮은 위치에 속해 왔고 그래서 **가족 내**에서 인권을 침해받은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인권감수성이 더 높아졌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젊은 세대의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과 달리 연령차별에 있어서는 60대 이상의 남성노인들이 심각성이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이는 **가족 내**의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가족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가장 덜 느끼는 집단이 10대 남자 청소년이었다. 인권교육을 학교에서부터 받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10대 남성의

가족 내 인권 침해나 차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것은 그들이 가정 안에서는 ‘아들’로서만 살았기 때문일 수 있다. 가족인권교육은 기존의 인권교육과 달리 관계적 속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수 있다. 출신지역, 인종, 성정체성, 장애 등의 개인의 고정적인 속성에 의한 것은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약자가 누구인지 비교적 분명하다. 그러나 역동적인 가족관계 안에서는 특정 속성을 가졌다고 하여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대상으로 소수자·약자를 쉽게 짚어낼 수 없다. 가족인권교육에서는 이러한 관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당사자들의 소통과 책임의식을 키움으로써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주목할 사항은 가족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생산되는 차별과 부정적 표현은 키나 외모와 같은 신체조건과 학력·학벌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인종, 성정체성, 장애, 난민 등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은 가정 안에서 거의 공유·확산되지 않았다. 이는 인권교육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므로 교육의 결과로 인권의식이 향상된 결과일 수도 있고, 적어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른 측정오차의 결과일 수도 있다. 아니면 성소수자나 난민과 같은 이슈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사회적으로 대두된 문제이므로 가정 안에서 공유될 기회 자체가 제한되었기에 나온 결과일 수도 있다. 무엇이 원인이든 간에 이러한 결과는 가정 안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확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가정 안에서 주로 생산되는 차별은 학력이나 학벌, 그리고 신체조건에 의한 것이었다. 학력·학벌이나 신체조건은 형제자매간, 친척 간, 엄마 친구의 **아들(엄친아)까지 와도**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게 되는 흔한 이유인 것이다. 가족인권교육에서는 성취지향적 사회, 외모지상주의의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학력·학벌을 이유로 무시하거나 지나친 학업 강요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것, 키나 몸무게와 관련한 혐오표현이나 키나 몸무게, 피부에 집착하여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혐오의 피라미드에서도 나타났듯이 편견과 고정관념이 아무렇지 않게 표현되고 **공유하다 보면** 이는 더 큰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가족인권교육을 통해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최소화하여 건강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을 통해 가족인권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전문가 델파이 1차 조사에서는 가족인권을 ‘가족이라는 맥락 속에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정의하였고,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 전문가도 있었으나 기존의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가족인권’이라는 용어가 개인의 인권을 희생시키고 가족이라는 집단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전문가 간의 불일치가 컸다. 이는 지금까지 다루어진 적이 없는 개념이었으므로 가족인권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가족인권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기존의 인권교육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가족 안에서 주로 발생하는 편견과 차별, 인권 침해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관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당사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도 친밀한 가족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 및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평가를 통해 ‘가족인권’이라는 용어가 인권교육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용어의 보완과 사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족인권교육은 교육의 대상을 발달 수준(연령)으로 나누거나 한정할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수하는 교육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가족인권교육 체계도에서 교육대상을 나누어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모든 대상이 배워야 할 핵심개념과 주요 내용 교육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에서는 교육대상의 특성에 따라 교육 방법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세분화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교육 자료 개발과 함께 교육 기회 접근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별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60대 이상은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는데, 필요성 인식이 낮은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 접근과 노출의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모든 가족원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가족인권의 공통 교육내용을 가장 쉽고 간결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개인적, 관계적 특성에 따라 모듈식으로 다양한 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2019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02). 우리 교과서의 인권이야기.
- 국가인권위원회(2005). 초등학교 인권교육프로그램.
- 국가인권위원회(2006).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 국가인권위원회(2009). 인권친화적 도입을 위한 집필기준.
- 국가인권위원회(2019). 2019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
- 김민아(2010). 인권은 대학 가서 누리라고요?. 서울: 플레마.
- 김진희, 최인희, 김자영, 이로미, 이해경, 전보미(2018).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조사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OR 2018-10)
- 김현주(2003). 입시가족-중산층 가족의 입시 사용법. 서울: 새물결.
- 문용린, 박병선, 안경환, 한기철(2003).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법무부(2019). 출입국통계자료-체류외국인통계.
- 서울특별시(2015).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
- 서울특별시교육청(2018a). 중등 교육과정연계 학생인권교육 지도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2018b). 초등 교육과정연계 학생인권교육 지도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2019). 인권교육자료 목록.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6a). 2016 인권교육 추진 계획.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6b). 학생인권교육 자료 목록.
- 이쌍철, 김정아, 김미숙, 김진희, 이호준, 김영식, 김자영, 이현주, 이지미(2019).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초·중등교육연구본부 민주시민교육연구실.
- 정원호, 손승연, 이지영, 윤인수(2016). 군 인권지표 개발 연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 조주은(2013). 기획된 가족. 파주: 서해문집.
- 통계청 e-나라지표(2019). 결혼이민자 현황 통계자료.
-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2010\)](#). 변화하는 사회의 가족학. 파주: 교문사.
-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중학생의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한국교육개발원(2018a). 국제인권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 한국교육개발원(2018b).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조사방안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2018c). 2018 인성교육지도자료(고등학교).
- 한국교육개발원(2018d). 2018 인성교육지도자료(중학교).
- 한국교육개발원(2018e). 2018 인성교육지도자료(초등학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0). 인권교육체계화연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홍성수(2018). 말이 칼이 될 때. 서울: 어크로스.
- Elder, G. H.(1994). Time, human agency, and social change: Perspectives on the life cours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7(1), 4-15.
- Kerr, M. E. & Bowen, M.(1988). Family Evaluation -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 Norton & Co Inc. 남순현 역(2005).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학지사.
Reardon, B.(2010). Educating for human dignity: Learning abou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Wassmuthcenter(2003). K-12 Human Rights Education(Idaho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인터넷 사이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국가인권용어사전

<https://www.humanrights.go.kr/site/>

[program/dictionary/listDictionary?menuid=001003006](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dictionary/listDictionary?menuid=001003006) 에서 2019.7.30.
인출.

ADL(Anti-Defamation League) 홈페이지, Pyramid of Hate

<https://www.adl.org/media/11144/download>에서 2019.9.2. 인출.

2019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부록

부록 1. 델파이 설문지 1차

가족인권교육 체계도 작성을 위한 델파이 1차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민주적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2019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기초 연구』입니다.

이에 연구진은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을 위하여 **가족인권의 정의, 교육대상, 목표, 핵심개념, 교육내용**에 대하여 가족 교육과 인권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한 ‘가족인권교육 체계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시한 설명문을 읽고, 내용을 검토하시어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조사에 참여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철저히 비밀 보장이 되고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최새은

공동연구원: 주현정, 이지선

※ 본 조사는 전자우편(e-mail)으로 실시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아래 기한 내에 귀한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응답방법: 보내드린 조사지에 응답하신 후 저장한 파일을 전자우편(e-mail)로 송부
- ▶ 수 신 자: 이은진 (skymilk@daum.net)
- ▶ 조사기한: 2019년 10월 27일까지

※ 본 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구진에게(최새은 (saeun@knue.ac.kr); 이지선 (gngntzzzz@naver.com))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는 『가족인권교육 체계도』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것으로, 정의 및 체계도 구성 범주의 5영역, 총 6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각 문항에서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1.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

- 변화하는 가족주의 가치관
 - 가족을 둘러싼 사회 변화와 함께 현대 가족은 위계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이동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민주주의 모습을 지향하고자 하나, 여전히 가족 안에서는 구성원의 희생이 강요되고, 폭력, 자아실현장벽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가족 내** 다양한 가치관의 혼재로 젠더·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가족을 구성하는 수평 축과 수직 축이 젠더와 세대만큼 심화된 젠더갈등과 세대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족인권교육 필요
- 민주적 가족문화 기반 마련 필요
 - 정부는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가족 유형의 증가, 성평등한 가족문화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대응은 있으나, 실제 민주적 가족문화의 핵심인 가족구성원 개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부족함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 증가. 돌봄 수혜자(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의 인권과 더불어, 돌봄 제공자의 인권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부족한 실정
- 다양성의 가치 증가
 - 다문화 사회로 진입
 - 유네스코의 2014-2021 교육부문전략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민교육의 보급과 추진 활성화
- 한국의 제도적 가족주의와 민주적 가족문화 형성의 사회적 요구 간의 충돌
 - 보육, 교육, 소득지원, 부양 등 가족정책에 있어서 제도적 가족주의가 여전히 존재하나, 가족구성원들 개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민주적 가족문화 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큼
 - 민주적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흐름에 조응하여 한국 가족의 맥락 안에서 인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개념, 목표, 내용, 방법을 다룰 필요가 있음

2. 연구진의 ‘가족인권교육’의 지향점

민주적 가족 문화 형성을 위해 1) 가족구성원 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2)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존중을 목표로 하는 가족인권교육을 구성하고자 함. 나아가 3) 자신의 가족과는 다른 다양한 가족의 선택이나 문화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존중까지를 목표로 설정하여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공헌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함.

I. 『가족인권』의 정의

‘가족인권’이란 **가족 내**의 개별 구성원들의 인권과 다양한 가족 간의 인권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가족인권’은 단위로서의 가족을 유지하고 가족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방향으로 가족구성원이 행동해야 한다는 이념적 차원의 가족주의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가족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보편적인 권리를 가진 개인의 인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인들로 구성된 가족 안과 밖에서 인권이 발현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따라서 ‘가족인권’이란 **가족이라는 맥락 속에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II. 타당성 정도 및 의견

※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관련 아래 문항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내용 및 답변 관련 기타 의견은 아래 칸에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전체**는 본 설문지 뒷장에(pp.11-13) 첨부되어 있습니다.

- (1번 문항) 가족인권의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족인권’이란 가족이라는 맥락 속에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 “가족인권”에 대한 설명과 정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1) 귀하가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2)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표현과 내용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 설명				
■ 인권의 일반적인 정의: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본 체계도에서는 가족인권을 가족 내의 개별 구성원들의 인권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 ■ ‘가족인권’은 단위로서의 가족을 유지하고 가족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방향으로 가족구성원이 행동해야 한다는 이념적 차원의 가족주의와 대조되는 개념임. ■ ‘가족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보편적인 권리를 가진 개인의 인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인들로 구성된 가족의 안과 밖에서 인권이 발현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개념.				

- (2번 문항) 교육의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체계도에서는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대상을 서울시 가족학교의 구성에 맞춰 “예비부부, 신혼부부, 아동기 부모, 청소년기 부모, 아버지교실”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교육대상” 선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1) 귀하가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2) 추가하고 싶은 교육대상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 설명 ■ 서울가족학교란 가족 간에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실로 이루어진 교육 프로그램. 행복한 가족을 꿈꾸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실시 -예비/신혼부부교실: 행복한 결혼생활의 시작을 위한 준비 교육 -아동기 부모교실: 건강한 부모역할에 대한 철학, 자녀 돌봄에 대한 책임 등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 함께 고민하는 부모 간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청소년기 부모교실: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 모두 행복한 부모성장교육 -아버지 교실: 더 이상 '돈 벌어오는 사람'이 아닌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 교육 -중년기/노년기 부부교실: 신혼기처럼 부부만의 삶이 주를 이루는 시기 백세시대가 되면서 늘어나는 시기임. 따라서 평등한 부부간의 관계,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 역할, 은퇴 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준비 등 교육				

- (3번 문항) 교육의 목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체제도에서는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목표를
“개인 존중, 관계 존중, 공동체 존중”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교육목표” 선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1) 귀하가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2)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교육 목표가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 설명 ■ 교육대상별 목표는 모두 동일함 ■ 가족구성원 내 개인의 인권 존중을 출발점으로 하여 가족인권이 또 다른 가족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목표 설정 ■ 개인 존중: 가족구성원 안에서 각 개인이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희생당하거나 차별 받지 않음 ■ 관계 존중: 가족인권은 개별 가족구성원의 독립된 인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당사자를 모두 존중 ■ 공동체 존중: 가족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가족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포용사회에 기여				

- (4번 문항) 핵심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체계도에서는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핵심개념을
 “개인 존중(자아와 타인의 권리), 관계 존중(소통과 책임), 공동체
 존중(시민의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핵심개념” 선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견> (1) 귀하가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2)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핵심개 념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개인 존중	예) 자아와 타인의 권리	
		관계 존중	예) 소통과 책임	
		공동체 존중	예) 시민의식	
※ 설명				
■ 가족인권교육에서 개인 존중, 관계 존중, 공동체 존중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 개념 ■ 교육대상 별 가족인권교육 내용 요소의 기저를 이루는 중심 개념 ■ 목표 수준에 따른 핵심개념은 모두 동일				

- (5번 문항) 교육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체계도에서는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주요내용으로
 “생애주기별 교육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선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대상	교육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예비 부부	개인 존중	-자신의 권리, 자아 인식, 자아존중 감 확립 - 예비 배우자의 권리 -성역할 사회화, 양성성					
	관계 존중	-긍정적 의사소통 -공감적 이해, 공감과 수용					
	공동체 존중	-싱글, 성소수자 존중 -결혼의 사회적 역할, 결혼문화					
신혼 부부	개인 존중	-자신의 권리 자아 인식 -결혼관 -부부의 역할					
	관계 존중	-긍정적 의사소통 -갈등해결 -가족구성원의 인권 존중					
	공동체 존중	-근원가족, 창설가족 가족구성원들 과 나와의 관계 이해 -자신과 배우자의 가족문화와 규칙 에 대한 이해					
아동기 부모	개인 존중	-부모로서의 권리와 자아인식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로서의 자기돌봄					
	관계 존중	-아동기 자녀의 인권 존중 -자녀와의 교류관계 -성역할, 성평등					
	공동체 존중	-가족이기주의 -양육문화					

교육 대상	교육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청소년기 부모	개인 존중	-청소년기 부모로서의 권리와 자아 인식 -부모로서의 자기돌봄					
	관계 존중	-청소년기 자녀의 인권 존중 -역할 공유, 양성평등적인 성역할 -긍정적 의사소통 -갈등관리					
	공동체 존중	-청소년문화, 청소년권리 이해 -교육문화, 진로결정, 욕구이해					
아버지	개인 존중	-아버지로서의 권리 인식					
	관계 존중	-가부장적 남성다움, 성역할 -가족역할, 공동육아 -자녀와의 교류관계, 애착, 존중					
	공동체 존중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 여성의 인 권 존중, 책임의식 -가족문화의 변화					
중년기 부부	개인 존중	-중년으로서의 권리 인식, 중년기의 자아정체감 이해 -노후생활 대비					
	관계 존중	-긍정적 의사소통 -갈등해결 -중년기 배우자 인권 존중					
	공동체 존중	-사회에서 돌봄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이해 -노부모 돌봄 역할분담					
노년기 부부	개인 존중	-노인으로서의 권리 인식, 노화에 대한 이해 -건강한 노후생활 -노인의 역할 -노인으로서의 자기돌봄					
	관계 존중	-노년기 배우자 인권 존중 -긍정적의사소통 -갈등해결					
	공동체 존중	-가족의 돌봄과 가족생활의 변화					

<의견>		
(1) 귀하가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2)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교육 내용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예비부부	
	신혼부부	
	아동기부모	
	청소년기부모	
	아버지	
	중년기부부	
	노년기부부	

▪ (6번 문항) 그밖에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에 관해 건의할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Ⅲ. 일반적 사항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표를 해주시거나 적어주십시오.

주요업무분야	① 교수	② 연구	③ 공무원/교사
	④ 실천현장	⑤기타(구체적으로:)	
분야 경력	총 ()년		
주전공 (1개만 선택)	① 가족학	② 교육학	③ 사회복지학
	④ 사회학	⑤ 여성학	⑥기타()

빠진 응답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록.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개요

※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위하여 국내·외의 가족생활교육 및 인권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를 구안하였습니다.

대상	목표	핵심개념	주요내용	관련 가족인권
예비 부부	개인 존중	자아와 타인의 권리	-자신의 권리, 자아 인식, 자아존중감 확립 -예비 배우자의 권리 -성역할 사회화, 양성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환경권(건강한 환경에 서 생활할 권리)
	관계 존중	소통과 책임	-긍정적 의사소통 -공감적 이해, 공감과 수용	
	공동체 존중	시민 의식	-싱글, 성소수자 존중 -결혼의 사회적 역할, 결혼 문화	
신혼 부부	개인 존중	자아와 타인의 권리	-자신의 권리 자아 인식 -결혼관 -부부의 역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환경권(건강한 환경에 서 생활할 권리)
	관계 존중	소통과 책임	-긍정적 의사소통 -갈등해결 -가족구성원의 인권 존중	
	공동체 존중	시민 의식	-근원가족, 창설가족 가족구 성원들과 나와의 관계 이해 -자신과 배우자의 가족문화 와 규칙에 대한 이해	
아동기 부모	개인 존중	자아와 타인의 권리	-부모로서의 권리와 자아인 식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로서의 자기돌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보호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관계	소통과 책임	-아동기 자녀의 인권 존중	

대상	목표	핵심개념	주요내용	관련 가족인권
	존중		-자녀와의 교류관계 -성역할, 성평등	-교육권 -환경권(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공동체 존중	시민 의식	-가족이기주의 -양육문화	
청소년기 부모	개인 존중	자아와 타인의 권리	-청소년기 부모로서의 권리와 자아인식 -부모로서의 자기돌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참여권, 결정권 -청소년의 발달권 -교육권 -노동권(근로의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환경권(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관계 존중	소통과 책임	-청소년기 자녀의 인권 존중 -역할 공유, 양성평등적인 성역할 -긍정적 의사소통 -갈등관리	
	공동체 존중	시민 의식	-청소년문화, 청소년권리 이해 -교육문화, 진로결정, 욕구 이해	
아버지	개인 존중	자아와 타인의 권리	-아버지로서의 권리 인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환경권(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관계 존중	소통과 책임	-가부장적 남성다움, 성역할 -가족역할, 공동육아 -자녀와의 교류관계, 애착, 존중	
	공동체 존중	시민 의식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 여성의 인권 존중, 책임의식 -가족문화의 변화	
중년기 부부	개인 존중	자아와 타인의 권리	-중년으로서의 권리 인식, 중년기의 자아정체감 이해 -노후생활 대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보건의 권리(건강을 향수할 권리)
	관계 존중	소통과 책임	-긍정적 의사소통 -갈등해결	

대상	목표	핵심개념	주요내용	관련 가족인권
			-중년기 배우자 인권 존중	-환경권(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공동체 존중	시민 의식	-사회에서 돌봄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이해 -노부모 돌봄 역할분담	
노년기 부부	개인 존중	자아와 타인의 권리	-노인으로서의 권리 인식, 노화에 대한 이해 -건강한 노후생활 -노인의 역할 -노인으로서의 자기돌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관계 존중	소통과 책임	-노년기 배우자 인권 존중 -긍정적의사소통 -갈등해결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보건의 권리(건강을 향수할 권리)
	공동체 존중	시민 의식	-가족의 돌봄과 가족생활의 변화	-노동권(근로의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문화적 권리 -사회보장수급권;보건권 -환경권(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부록 2. 델파이 설문지 2차

가족인권교육 체계도 작성을 위한 델파이 2차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민주적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2019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기초 연구』입니다.

이에 연구진은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을 위하여 **가족인권교육의 정의, 교육목표, 핵심개념, 교육내용**에 대하여 가족 교육과 인권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한 ‘가족인권교육 체계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시한 설명문을 읽고, 내용을 검토하시어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조사에 참여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철저히 비밀 보장이 되고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최새은

공동연구원: 주현정, 이지선

※ 본 조사는 전자우편(e-mail)으로 실시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아래 기한 내에 귀한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응답방법: 보내드린 조사지에 응답하신 후 저장한 파일을 전자우편(e-mail)로 송부
- ▶ 수신자: 이은진 (skymilk@daum.net)
- ▶ 조사 기한: 2019년 11월 30일까지

※ 본 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구진에게(최새은 saeun@knue.ac.kr; 이지선 gngntzzzz@naver.com)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건강가정센터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Ⅰ. 연구진의 '가족인권교육'의 지향점

민주적 가족 문화 형성을 위해 1) 가족구성원 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2)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존중을 목표로 하는 가족인권교육을 구성하고자 함. 나아가 3) 자신의 가족과는 다른 다양한 가족의 선택이나 문화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존중까지를 목표로 설정하여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공헌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함.

Ⅱ. 타당성 정도 및 의견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문항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내용 및 답변 관련 기타 의견은 아래 칸에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전체는 본 설문지 뒷장에(p.8) 첨부되어 있습니다.

※ 본 조사는 『가족인권교육 체계도』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것으로, 정의 및 체계도 구성 범주의 4영역, 총 4문항으로 구성됩니다.

각 문항에서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1. 가족인권 정의 수정 전 후 및 수정 사유

■ 기존 ‘가족인권’ 정의를 아래와 같이 ‘가족인권교육’에 대한 정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에 대한 사유를 참고하시어 변경된 정의의 타당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란에 √표시해주시고, 추가 및 수정 보완이 필요한 세부항목에 대한 의견은 하단 공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	수정 후
‘가족인권’이란 가족이라는 맥락 속에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가족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가족 내 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보편적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가족 안에서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변경사유	
*가족인권이 가족이라는 집단의 인권이 아닌데 오해의 소지 있음(예: 1인 가구는 가족인권에서 제외된다고 직관적으로 생각됨) *가족인권교육: 학교나 군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족이라는 친밀한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 간의 인권 침해의 사례나 다른 가족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 수정된 “가족인권교육”에 대한 설명과 정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표현과 내용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 설명				
■ 인권의 일반적인 정의: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본 체계도에서는 가족인권을 가족 내의 개별 구성원들의 인권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 ■ ‘가족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보편적인 권리를 가진 개인의 인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인들로 구성된 가족의 안과 밖에서 인권이 발현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개념				

2.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대상 분류 삭제

■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대상 분류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삭제하였습니다.

수정 전	수정 후
본 체계도에서는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대상을 서울시 가족학교의 구성에 맞춰 “예비부부, 신혼부부, 아동기 부모, 청소년기 부모, 아버지, 중년기 부부, 노년기 부부”로 분류하였습니다.	-연구대상 분류 삭제-
변경사유 - 가족인권교육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일차적으로 활용될 예정이기에 서울시 가족학교의 구성에 맞추어 연구대상을 상정하였음. 그러나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단계나 가족 유형의 인권은 소외될 위험이 있고, 결혼을 전제로 한 생애주기에 한정하여 교육대상을 분류한 경향이 있으므로 가족인권교육의 취지와 맞지 않음 -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의 가족인권교육을 위해 대상을 분류하여 한정하기보다는 교육 목표에 집중하여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 타당도 검증 평균값(3.68) 가장 낮음	

3. 가족인권교육의 목표

■ 1차 델파이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족인권교육의 목표는 수정 없이 동일합니다.

1차 델파이 결과
• 가족 내 개인단위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상대적 관계의 존중, 더 나아가 공동체에 대한 존중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목표의 타당성에 동의 • 타당도 검증 평균값(4.58) 가장 높음 • 다만, 실제 교육내용에서 가정폭력의 심각성, 예방 및 대응 방안, 인권의 보호·보장, 공동체의 범위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교육내용이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 • '자기 존중-가족 존중-다양한 가족 존중'의 의견도 제시되었음. 가족인권이라는 어감상, 가족 존중과 다양한 가족 존중이 더 적합해 보이나, 가족인권이 가족구성원의 인권보다는 가족 집단의 권리나 목표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 목표를 유지하고자 함.

본 체계도에서는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목표를
"개인 존중, 관계 존중, 공동체 존중"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교육목표” 선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교육 목표가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4.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핵심개념

■ 1차 델파이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핵심개념은 수정 없이 동일합니다.

1차 델파이 결과
- 교육목표와 동일한 맥락(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의 특성상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로 개인-관계-공동체)에서 핵심개념 선정 타당성에 동의 - 높은 타당도 검증 평균값(4.42)이 나타남 - 다만, 타인 및 다른 가족이 존중받을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다른 가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제시를 통해 핵심개념의 보완적 설명이 필요함을 제시. 더불어 권리를 개인 존중에서만 명시한 이유에 대한 설명 보완 필요

본 체계도에서는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핵심개념을 "개인 존중(자아와 타인의 권리), 관계 존중(소통과 책임), 공동체 존중(시민의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핵심개념” 선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핵심개념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5.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 수정 전 교육내용은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정 전	수정 후
본 체계도에서는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주요내용으로 “생애주기별 교육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 생애주기별 교육대상에 따른 내용 분류 삭제 • 생애주기별 제시되었던 교육내용을 교육 목표와 핵심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통합 제시
변경사유	
• 교육대상 별 교육내용 분류 삭제 • 교육목표와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해당 교육내용 통합 제시	

□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목표-핵심개념에 따른 “교육내용” 선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목표	핵심 개념	주요 교육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개인 존중	자아와 타인의 권리	- 자기 권리 - 자기 존중 - 타인(다른 가족원)의 권리 - 타인(다른 가족원) 존중					
교육 목표	핵심 개념	주요 교육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관계 존중	소통과 책임	- 공감적 이해와 수용 - 친밀한 관계에서의 의사소통 - 갈등관리와 갈등해결 - 가족돌봄 역할 공유					
교육 목표	핵심 개념	주요 교육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공동체 존중	시민 의식	- 사회적 소수자 존중 - 포용적 공동체 문화 조성					
위의 교육내용 통합, 또는 누락되었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교육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적 사항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표를 해주시거나 적어주십시오.

주요업무분야	① 교수 ② 연구 ③ 공무원/교사 ④ 실천현장 ⑤기타(구체적으로:)
분야 경력	총 ()년
주전공 (1개만 선택)	① 가족학 ② 교육학 ③ 사회복지학 ④ 사회학 ⑤ 여성학 ⑥기타()

빠진 응답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록.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개요

※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가족생활교육 및 인권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를 구안하였습니다.

교육 목표	핵심개념	주요 교육내용	관련 가족인권	관련 가족인권 문제
개인 존중	자아와 타인의 권리	- 자기 권리 - 자기 존중 - 타인(다른 가족원)의 권리 - 타인(다른 가족원) 존중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정폭력 젠더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관계 존중	소통과 책임	- 공감적 이해와 수용 - 친밀한 관계에서의 의사소통 - 갈등관리와 갈등해결 - 가족돌봄 역할 공유	-환경권(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보호권	
공동체 존중	시민 의식	- 사회적 소수자 존중 - 포용적 공동체 문화 조성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교육권	

부록3. 설문지

1

일반특성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출생년도를 기입해주시시오. _____년

3.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거나, 다니고 계십니까?

- ① 초등학교(졸업) ② 중학교(졸업) ③ 고등학교(졸업) ④ 대학교(2-3년제)(졸업)
⑤ 대학교(4년제 이상)(졸업) ⑥ 대학원(졸업)

4. 귀하가 속한 사회경제적 수준은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하 ② 중 ③ 상

5. 성년이 되기 전까지 귀하의 주된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 | | | | |
|-----|------|------------|-----|-----|
| ①서울 | ②부산 | ③대구 | ④인천 | ⑤광주 |
| ⑥대전 | ⑦울산 | ⑧세종 | ⑨경기 | ⑩강원 |
| ⑪충북 | ⑫충남 | ⑬전북 | ⑭전남 | ⑮경북 |
| ⑯경남 | ⑰ 제주 | ⑱해외(북한 포함) | | |

6-1. 어린 시절(만 15세 이하) 주로 함께 살았던 가족구성원의 수를 적어주시시오. (본인포함)

_____명

6-2. 어린 시절(만 15세 이하) 주로 함께 살았던 가족구성원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를 모두 표시해주시시오.

- ① 부모님 ② 조부모님(친가, 외가) ③ 형제자매
④ 삼촌(고모, 이모, 숙부 등) ⑤ 기타()

7-1. 귀하의 현재 가족구성원의 수를 적어주시시오. (현재 같이 살지 않더라도 귀하께서 '나의 가족' 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_____명(본인포함)

7-2. [7-1]에서 응답한 가족구성원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③ 조부모님(친가, 외가, 배우자)

- ④ 형제자매 ⑤ 자녀(자녀의 배우자) ⑥삼촌(고모, 이모, 숙부 등)
⑦기타()

7-3. 현재 귀하가 **함께 사는** 가족원의 수를 적어주세요(본인포함) . ____명

8. 귀하는 적어도 한 분 이상의 부모님이 생존해계십니까?

- ① 아니요 ② 예

9.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재혼, 입양 등으로 인한 자녀 포함)

- ① 없음 ② 있음(____명)

10. 귀하는 형제자매가 있으십니까?

- ① 없음 ② 있음(____명)

2 가족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1. 귀하는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에서(부부간, 부모자녀 간, 형제자매 간, 고부 간 등)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차별, 폭력과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③ 심각하다
④ 매우 심각하다

2. 귀하는 우리 사회의 가족 안에서 표현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차별, 언어적 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소수자란, 사회적·역사적으로 차별 받아 온 집단을 말합니다. 숫자가 많더라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③ 심각하다
④ 매우 심각하다

3. 다음의 필요성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답해주십시오.

3-1. 귀하는 부부간의 평등과 존중을 위한 **부부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필요하지 않다 ③필요하다 ④매우 필요하다

3-2. 귀하는 부모자녀 간의 평등과 존중을 위한 **부모 대상**의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필요하지 않다 ③필요하다 ④매우 필요하다

3-3. 귀하는 부모자녀 간의 평등과 존중을 위한 **자녀 대상**의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필요하지 않다 ③필요하다 ④매우 필요하다

3-4. 귀하는 **인척 간**(시부모-며느리, 장인장모-사위, 동서 간 등)의 평등과 존중을 위한 가족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필요하지 않다 ③필요하다 ④매우 필요하다

3-5. 귀하는 **다른 세대**(자녀세대, 부모세대, 조부모세대 등)의 평등과 존중을 위한 가족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필요하지 않다 ③필요하다 ④매우 필요하다

3-6. 귀하는 **성별**에 따른 차이(아들과 딸,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남편, 친가와 외가 등)의 평등과 존중을 위한 가족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필요하지 않다 ③필요하다 ④매우 필요하다

3-7. 귀하는 가정 내 **돌봄을 받는 사람**(아이, 노인, 장애인 등)의 평등과 존중을 위한 가족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필요하지 않다 ③필요하다 ④매우 필요하다

3-8. 귀하는 가정 내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양육자, 가족간병인 등)의 평등과 존중을 위한 가족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필요하지 않다 ③필요하다 ④매우 필요하다

3-9. 귀하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싱글, 동거가족, 무자녀가족,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평등과 존중을 위한 가족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필요하지 않다 ③필요하다 ④매우 필요하다

3-10.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가족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필요하지 않다 ③필요하다 ④매우 필요하다

다음은 귀하의 어린 시절(15세 이하)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어린 시절 귀하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인권 침해나 차별, 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했습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② 심각하지 않았다 ③ 심각했다 ④ 매우 심각했다 ⑤ 해당 없음

1-2. 어린 시절 귀하 가정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인권 침해나 차별, 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했습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② 심각하지 않았다 ③ 심각했다 ④ 매우 심각했다 ⑤ 해당 없음

1-3. 어린 시절 귀하 가정에서는 **성별에 따른**(아들과 딸,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남편, 친가와 외가 등) 인권 침해나 차별, 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했습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② 심각하지 않았다 ③ 심각했다 ④ 매우 심각했다 ⑤ 해당 없음

1-4. 어린 시절 귀하 가정에서는 **연령에 따른**(출생순위, 어른과 아이 등) 인권 침해나 차별, 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했습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② 심각하지 않았다 ③ 심각했다 ④ 매우 심각했다 ⑤ 해당 없음

1-5. 어린 시절 귀하 가정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적 표현은 어느 정도 심각했습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② 심각하지 않았다 ③ 심각했다 ④ 매우 심각했다 ⑤ 해당 없음

다음은 최근 1년 귀하의 현재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귀하의 현재 가정에서는 최근 1년 간 **부부간의** 인권 침해나 차별, 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했습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② 심각하지 않았다 ③ 심각했다 ④ 매우 심각했다 ⑤ 해당 없음

2-2. 귀하의 현재 가정에서는 최근 1년 간 **부모자녀 간의** 인권 침해나 차별, 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했습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② 심각하지 않았다 ③ 심각했다 ④ 매우 심각했다 ⑤ 해당 없음

2-3. 귀하의 현재 가정에서는 최근 1년 간 **성별에 따른**(아들과 딸,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남편, 친가와 외가 등) 인권 침해나 차별, 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했습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② 심각하지 않았다 ③ 심각했다 ④ 매우 심각했다 ⑤ 해당 없음

2-4. 귀하의 현재 가정에서는 최근 1년 간 연령에 따른(출생순위, 어른과 아이 등)인권 침해나 차별, 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했습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② 심각하지 않았다 ③ 심각했다 ④ 매우 심각했다 ⑤ 해당 없음

2-5. 귀하의 현재 가정에서는 최근 1년 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적 표현은 어느 정도 심각했습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② 심각하지 않았다 ③ 심각했다 ④ 매우 심각했다 ⑤ 해당 없음

4 공동체 영역

1. 귀하의 어린 시절 가족 내에서 다음의 이유로 해당인에게 혐오표현이나 차별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혐오표현이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깰보거나) 위협하는 표현

-그들을 차별하고자 하거나 그들에게 폭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표현 등을 말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란, 사회적·역사적으로 차별 받아 온 집단을 말합니다. 숫자가 많더라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 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장애인,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소수 종교 신도 등의 집단을 비하하거나 차별하고자 한다면 혐오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문항	① 전혀 없음	② 가끔 경험	③ 자주 경험	④ 매우 자주 경험
1)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자니까.. ~해야지/~하지 말아야지)				
2)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자니까.. ~해야지/~하지 말아야지)				
3) 임신 또는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애엄마니깐 그래...)				
4) 비혼자라는 이유로 (결혼을 안해서 그래...)				
5) 무자녀 가정이라는 이유로 (자녀가 없으니깐 모르지...)				
6) 다둥이 가정이라는 이유로				

문항	① 전혀 없음	② 가끔 경험	③ 자주 경험	④ 매우 자주 경험
(자녀가 많아서...)				
7)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엄마/아빠가 안 계시니깐...)				
8) 종교를 이유로				
9) 장애를 이유로				
10) 나이가 많다는(중년, 노인)이유로				
11) 나이가 적다는(아동, 청소년)이유로				
12)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13)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를 이유로				
14) 키, 몸무게,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15) 성 소수자(동성애, 트랜스젠더 등)를 이유로				
16) 특정지역 출신(서울, 전라도, 경상도 등) 을 이유로				
17) 난민을 이유로				
18) 국제결혼을 이유로				

2. 최근 1년 귀하의 **가족 내에서** 다음의 이유로 해당인에게 혐오표현이나 차별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문항	① 전혀 없음	② 가끔 경험	③ 자주 경험	④ 매우 자주 경험
1)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자니까.. ~해야지/~하지 말아야지)				
2)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자니까.. ~해야지/~하지 말아야지)				
3) 임신 또는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애엄마니깐 그래...)				
4) 비혼자라는 이유로 (결혼을 안해서 그래...)				
5) 무자녀 가정이라는 이유로 (자녀가 없으니깐 모르지...)				
6) 다둥이 가정이라는 이유로				

문항	① 전혀 없음	② 가끔 경험	③ 자주 경험	④ 매우 자주 경험
(자녀가 많아서...)				
7)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엄마/아빠가 안 계시니깐...)				
8) 종교를 이유로				
9) 장애를 이유로				
10) 나이가 많다는(중년, 노인)이유로				
11) 나이가 적다는(아동, 청소년)이유로				
12)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13)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를 이유로				
14) 키, 몸무게,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15) 성 소수자(동성애, 트랜스젠더 등)를 이유로				
16) 특정지역 출신(서울, 전라도, 경상도 등) 을 이유로				
17) 난민을 이유로				
18) 국제결혼을 이유로				

2019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발 행 일: 2020. 2.

발 행 처: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기획·편집: 교육지원팀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길 6

전 화: 02) 318-8168

팩 스: 02) 318-0228

홈 페이지: <http://familyseoul.or.kr>

인 쇄 처: 성균관복사(02-877-7187)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습니다.

무단복제를 금지합니다.